연구보고서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조동희
이철원
이현진
정민지
문성만

1990-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조동희 · 이철원 · 이현진 · 정민지 · 문성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인 쇄 2020년 12월 24일
발 행 2020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름(02-2273-7012)

ⓒ20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789-5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꾸준히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유럽통합이 브렉시트(영국의 탈퇴)라는 암초를 만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더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EU의 여러 회원국에서 정당들이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였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反)이민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민 및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관련 연구에 따르면 반이민 정서가 강할수록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이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태를 우려합니다.

그러나 유럽 내에서 이민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 경제에도 다각도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또한 특정 산업의 노동공급을 이민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러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한국보다 먼저, 한국보다 더 크게 이민유입을 경험한 EU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EU의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U의 이민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정해 봄으로써 한국의 미래를 전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앞서 언급한 우려, 즉 유입된 외국인 노동력이 내국인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우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한국의 독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본원에서 유럽 경제를 연구하는 조동희 부연구위원, 이철원 선임연구원, 이현진 전문연구원과 아프리카 경제를 연구하는 정민지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북대학교 경제학부의 문성만 교수가 외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진 외에도 본원의 안성배 선임연구위원, 장영욱 부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의 강유덕 교수,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영아 부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의 류한별 교수, 공정거래위원회의 박현규 사무관이 자문과 심의를 통해 본 연구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가다듬는 데 기여한 익명의 심의원들을 비롯해 본 연구의 수행과 최종보고서 작성에 이바지한 모든 손길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12월

원장 김흥종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

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

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 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

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

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 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2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2. 선행연구 ····· 23
3. 보고서의 구성 ····· 28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 29

1. 역내 이민 ····· 31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 32
   가. 법적 근거 ····· 32
   나. 합법이민 ····· 33
   다. 불법이민 및 난민 ····· 35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 38
   가. 독일 ····· 39
   나. 프랑스 ····· 41
   다. 영국 ····· 43
   라. 비세그라드 4국 ····· 45
   마. 터키 ····· 47

4. EU-아프리카 간 협력 ····· 48
가. 다자협력 ····· 48
나. 양자협력 ····· 53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 62
가. 비숙련노동자 대상 제도 ····· 62
나. 숙련노동자 대상 제도 ····· 67

제3장 이민유입 현황 ····· 73

1. 거주 외국인 규모 ····· 74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 86
3. 소결 ····· 89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93

1. 관측단위 ····· 95
2. 실증분석 모형 ····· 97
가. 이민유입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 97
나.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 100
다.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 101
3. 자료 ····· 102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103
가. OLS 추정 결과 ····· 104
나. 2SLS 추정 결과 ····· 106
다. 강건성 검증 ····· 107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 110
가. OLS 및 2SLS 추정 결과 ····· 111
나. 강건성 검증 ····· 112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 113
가. OLS 및 2SLS 추정 결과 ····· 114
나. 강건성 검증 ····· 115
7. 소결 ····· 11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19

1. 연구결과 요약 ····· 120
2. 정책 시사점 ····· 123

참고문헌 ····· 127

Executive Summary ····· 142

표 차례

표 2-1. 발레타 행동계획 ····· 50
표 2-2. 마라케시 행동계획 ····· 52
표 2-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EU 회원국의 책무 ····· 55
표 2-4. EU-카보베르데 MP 주요 내용 ····· 57
표 2-5. EU-모로코 MP 주요 내용 ····· 59
표 2-6. 고용허가제 체류자격별 및 업종별 할당 인원(2020년) ····· 66
표 2-7.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장기체류비자 종류 ····· 69
표 3-1. 2019년 EU(영국 포함) 역내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 규모 ····· 75
표 3-2. EU(28개)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 ····· 76
표 3-3.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규모 상위 5개국: EU 회원국 ····· 79
표 3-4. EU(28개국) 회원국 중 루마니아인 거주 규모 상위 5개국: 2005년 대 2019년 ····· 80
표 3-5.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규모 상위 5개국: EU 비회원국 ····· 82
표 3-6.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터키인 규모 상위 5개국 ····· 83
표 3-7.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모로코인 규모 상위 5개국 ····· 84
표 3-8.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시리아인 규모 상위 5개국 ····· 86
표 3-9.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취업상황 ····· 87
표 3-10. EU(28개)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별 외국인 취업상황 ····· 88

표 4-1. 실증분석의 직종 분류 ····· 97
표 4-2. 요약통계량: 관측단위=지역(i)×교육수준(e)×연령(a)의 조합 ····· 102
표 4-3. 요약통계량: 관측단위=지역(i)×직종(o)×연령(a)의 조합 ····· 103
표 4-4.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 104
표 4-5.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 105
표 4-6.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구변수 추정: 지역=NUTS 2단위 ····· 106
표 4-7.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국가 ····· 108
표 4-8.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국가 ····· 108
표 4-9.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NUTS 1단위 ····· 109
표 4-10.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NUTS 1단위 ····· 109
표 4-11.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2SLS): 지역=국가 ····· 109
표 4-12.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2SLS): 지역=NUTS 1단위 ····· 110
표 4-13.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 111
표 4-14.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 112
표 4-15.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 113

표 4-16.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 114
표 4-17.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 115
표 4-18.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 116
표 4-19.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 116
표 4-20.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 116
표 4-21.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 117

그림 차례

그림 3-1. EU 역내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의 외국인 거주 규모 추이 (1998~2019년) ····· 77
그림 3-2. 유럽 지도 ····· 81
그림 3-3. 유럽 지도(터키 포함) ····· 83
그림 3-4. 유럽 및 북아프리카 지도 ····· 84
그림 3-5. EU 역내 거주 시리아인 규모 추이 (1998~2019년) ····· 85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독일의 거주허가 종류별 특징 ····· 41
글상자 2-2. 프랑스 취업비자 종류별 특징 ····· 43
글상자 2-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협력국(역외국)의 책무 ····· 54
글상자 2-4.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변경 허용 사유 ····· 64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설립을 시작으로 회원국 확대와 회원국 간 통합 심화의 일변도를 걸어온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영국의 탈퇴(브렉시트, Brexit)는 큰 충격이었다. 이에 더해, 브렉시트 국민투표(현지 시각 2016년 6월 23일 실시) 이후 EU의 여러 회원국에서 정당들이 자국의 EU 탈퇴를 공론화하였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현지 시각 2016년 11월 8일)에서는 반(反) 이민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이민 및 난민 유입에 반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련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반이민 정서가 강한 유권자일수록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고, 2000년대 이후에 EU에 새로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브렉시트 찬성표 비율이 높았다.[1] 또한 영국 이외의 EU 회원국에서도 이민 유입 증가가 반이민 정서를 키웠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

이처럼 이민 및 난민 유입이 EU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또한 이민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부 산업의 노동공급을 이민유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러한 의존도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3] 따라서 한국보다 먼저, 한국보다 더 크게 이민을 경험한 EU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1) Becker, Fetzer, and Novy(2017); Arnorsson and Zoega(2018).
2) Gerdes and Wadensjö(2010); Halla, Wagner, and Zweimüller(2012); Otto and Steinhardt (2014).
3) 이철희, 정선영(2015); 이철희, 김혜진(2020).

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전반에 걸쳐, 가급적 노동이민에 비중을 두고 이민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EU의 노동이민에 관한 문헌의 주요 관심사는 우선 지역 및 국가 간 경기조절기제로서 노동이민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Arpaia *et al.*(2016)은 Blanchard and Katz(1992)가 제안한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을 이용하여, EU 회원국 간 비대칭적 노동수요 충격에 대한 노동이민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관측단위는 국가(15개 EU 회원국)이고, 표본기간은 1970~2013년이며, 자료는 EU 집행위원회의 AMECO(Annual Macroeconomic database)와 EU의 고용통계인 EU LFS(European Labour Force Survey)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EU 회원국 간 노동이민이 역내 비대칭적 노동수요 충격을 1년 내 약 25%를 흡수하고 최대 50%(5년 내)를 흡수한다. 또한 유로화 출범 이후 비대칭적 충격에 대한 노동이민과 실질임금의 반응성이 높아졌다. 이 결과로 미루어, EU 회원국 간 큰 실업률 격차가

지속될 경우 역내 노동이민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Basso, D'Amuri and Peri(2019)는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유로 지역 개별 회원국의 비대칭적(asymmetric) 노동수요충격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노동이동성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관측단위는 국가 및 지역이고, 표본기간은 2007~16년이며, 자료는 EU LFS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동의 경기순응성(cyclicality)은 이민자가 내국인보다 더 강하다. 이민자의 이러한 성향은 고용량이 1 표준편차 변할 때 고용률이 변하는 정도를 국가 단위에서 6% 줄이고 지역 단위에서 7% 줄인다. 노동이동성의 경기순응성을 EU와 미국 간 비교하면, 이민자(EU는 역외 출생)의 경우에는 EU와 미국이 유사하지만, 내국인(EU는 역내 출생)은 미국이 훨씬 크다. 이는 EU 역외 출생 이민자가 EU 역내 노동시장 통합 심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Jauer *et al.*(2019) 또한 지역 및 연도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이민이 노동시장의 비대칭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미친 영향을 유럽-미국 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관측단위는 지역이고, 표본기간은 2006~16년이며, 자료는 유럽은 EU LFS를 사용하고, 미국은 미국지역사회조사(ACS: American Community Survey)와 상시인구조사(CPS: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충격(실업률 변화)에 대한 노동이동의 반응은 유럽-미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유럽의 경우 이민이 비대칭적 노동시장충격을 1년 내 최대 25%까지 흡수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효과는 주로 신규 EU 가입 회원국이나 역외(즉 EU 비회원국)에서 유입되는 이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yer and Smets(2015)는 앞서 언급한 Blanchard and Katz(1992)의 VAR을 이용하여, ① 유럽의 지역(region) ② 미국의 지역 ③ 유럽의 국가 등 3가지 지리적 단위의 노동수요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반응을 비교분석하였다. 표본기간은 앞서 설명한 Arpaia *et al.*(2016)과 유사하게 1976~2013년이고, 자료는 유럽은 EU LFS를 사용하

고, 미국은 CPS와 지역실업통계(LAUS: Local Area Unemployment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단위에서는 유럽과 미국 모두 노동이동성이 노동수요충격에 대한 장기적 조정의 약 50%를 차지한다. 앞서 설명한 Jauer *et al.*(2019)과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에서는 충격에 대한 조정기제로서 노동이동성의 역할이 유럽과 미국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유럽의 국가 단위에서는 노동이동성의 역할이 이보다 작아서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조정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헌은 이민유출이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Elsner(2013a)는 리투아니아의 EU 가입(2004년)에 따른 이민유출이 리투아니아 내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Borjas(2003)가 제안한 군집화(clustering)를 이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성·교육수준·경력 등을 기준으로 군집을 나누고, 군집 내 변이(within-cluster varia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보통의 경우 송출국은 유출이민자의 목적지 국가를 기록하지 않아서 자료에 제약이 있으나, 2004년에 신규로 EU에 가입한 국가는 영국·아일랜드·스웨덴으로만 이민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표본기간은 2002~06년이고, 자료는 리투아니아 가구조사(Household Budget Survey), 아일랜드 센서스, 아일랜드와 영국의 노동허가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유출 1%p 증가는 송출국의 실질임금을 0.67% 상승시킨다. 그런데 성별로 따로 분석할 경우, 앞의 결과는 남성의 경우만 유의하다. 이처럼 이민유출이 송출국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은 송출국 노동시장 내 노동공급 감소로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설정에서, Elsner(2013b)는 Borjas(2003)와 Card and Lemieux(2001)가 제안한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유출이 송출국의 청년임금은 증가시켰으나 중장년 임금에는 영향이 없고, 송출국의 고숙련-저숙련 간 임금분포에도 영향이 없다.

이민유출이 송출국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①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효과(임금↑)와 ② 경제활동인구 내 숙련도 분포 변화에 따른 일반균형효과(임금↓)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민유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경우 ①의 크기가 ②를 압도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①과 ②가 상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Mayr and Peri(2009)는 이민유출(동유럽→서유럽)이 송출국(동유럽)의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중첩세대(OLG)모형을 이용하였다. 의사결정 단위는 개인이고, 의사결정 대상(변수)은 교육 수준, 이민 여부, 역이민 여부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 수익률이 더 높은 국가(서유럽)로의 이민이 가능해짐에 따라 송출국(동유럽)의 인적자본 투자 유인이 높아져서 송출국에 'brain gain'이 발생한다. 또한 송출국 노동시장에 역이민자 이점(premium)이 있을 경우, 상기한 'brain gain'의 크기는 '일시적 이민(temporary migraion)'만 가능하더라도 '항구적 이민(permanent migration)'이 가능할 때만큼 크다. 역이민자의 인적자본 수준은 역이민자 이점이 인적자본 수준에 비례할수록 높아지는데, 특히 역이민자 이점이 인적자본에 따라 증가할 경우, 인적자본이 가장 높은 이민자들이 역이민을 하고 그 결과로 송출국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진다. 보다 최근의 맥락에서, Anelli *et al.*(2019)은 이탈리아의 이민유출이 이탈리아 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Anelli and Peri(2017)가 제안한 이민유출에 대한 도구변수를 이용하여 횡단면 실증분석을 하였다. 관측단위는 지역노동시장(local labor market)이고, 표본기간은 2005~15년이며, 자료는 이탈리아 상공회의소의 이탈리아 기업 모집단 자료, 이탈리아 전국사회보장공단(INPS: Istituto Nazionale della Previdenza Sociale)의 지역노동시장 자료, 이탈리아 통계청인 Istat(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의 이민유출 자료, Anelli and Peri(2017)의 재외 이탈리아인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유출은 기업 수를 감소시키는데, 특히 폐업 증가보다

는 창업을 감소시킨다. 이 효과의 60%는 이민유출에 따른 청년층 감소의 결과이고, 35%는 기업가정신 감소의 결과이다(즉 기업가정신이 강할수록 이민 확률이 높음). 또한 이민유출은 총고용도 감소시킨다.

방법론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이 유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노동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Borjas(2003, 200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 이민유입이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노동시장을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으로 정의할 때보다 주(state)나 국가(nation)로 정의할 때 더 크다. Filer(1992), Frey(1995, 1996), Borjas, Freeman, and Katz(1997), Borjas(1999) 등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다.[4)]

또한 선행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선택편이(selection bias)에 따른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이민자가 이민 대상 국가나 지역을 결정할 때 해당 노동시장의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노동시장 상황이 더 좋은 지역일수록 이민유입이 더 활발할 것이다. 이 경우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치에 상향편이(upward bias)가 존재할 것이다. 일부 선행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변수 추정(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도구변수는 지역별 이민자 네트워크 수준(예: 과거 이민유입 규모)이다.[5)] 이는 이민 대상 지역 결정 시 자신과 같은 문화권이나 언어권 출신 이민자가 더 많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artel(1989)은 동일 민족공동체(ethnic community)의 존재 여부가 이민 지역

---

4) 반면에 Card and DiNardo(2000), Card(2001) 등은 이들과 달리 노동시장의 정의가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한다.

5) Altonji and Card(1991); Hunt(1992); Card(2001); Dustmann *et al.*(2003); Card and Lewis (2005).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개별 노동시장(국가 또는 지역)의 과거 이민유입 규모는 해당 노동시장의 현재 이민유입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해당 노동시장의 현재 노동시장 결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이다. 즉 과거의 이민유입 규모는 오직 현재의 이민유입 규모를 통해서만 현재의 노동시장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과거의 이민유입 규모 등 해당 지역의 이민자 네트워크 수준이, 현재의 노동시장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현재의 이민유입 규모에 대한 적절한 도구변수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보고서의 구성

이어지는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주요 관련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한다. 제3장은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EU의 이민유입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한다. 제4장은 EU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끝으로 제5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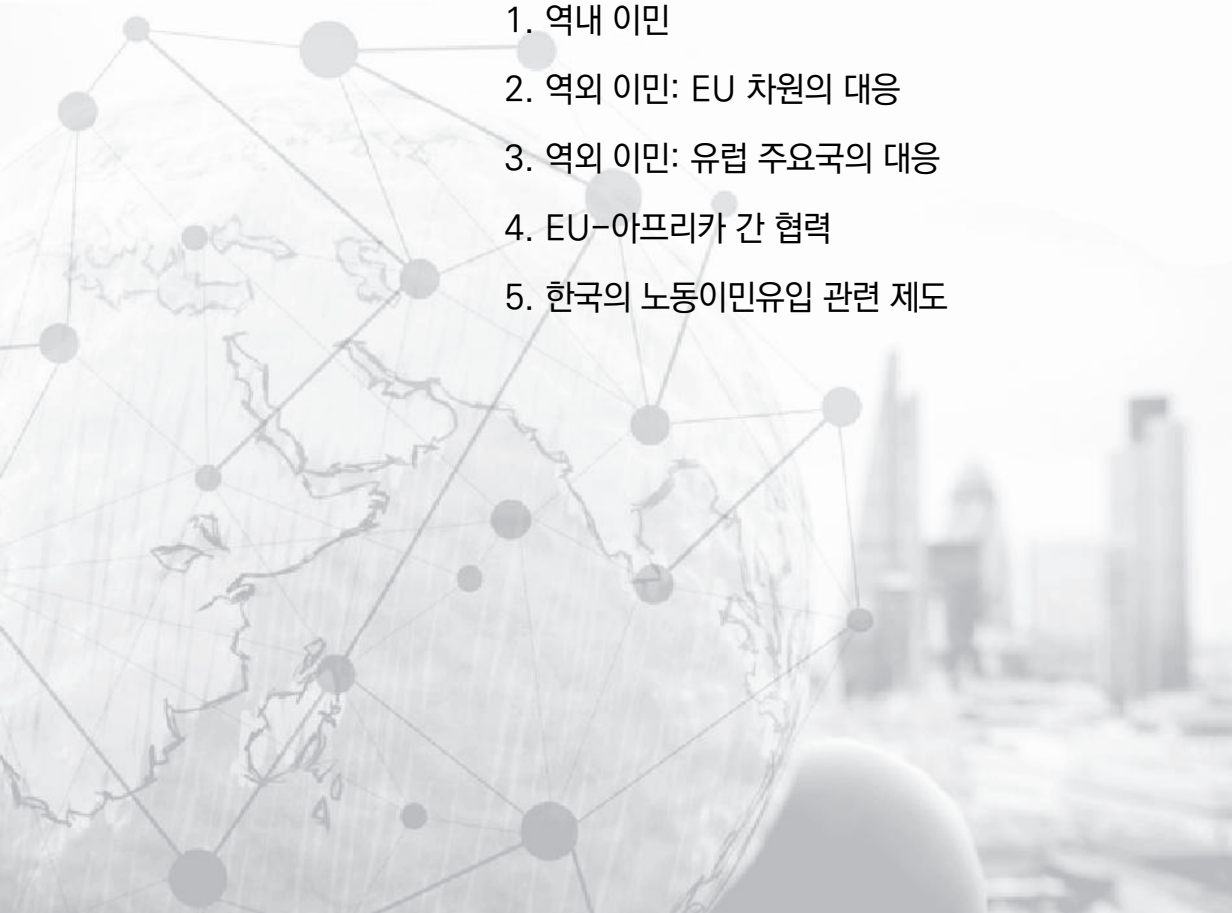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본 장은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EU가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EU는 역내 노동시장이 통합되어 있어서, EU 회원국 국민은 역내 노동이민이 자유롭다. 반면에 역외국민(즉 EU 회원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EU 역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EU 차원의 대응과 개별 회원국 차원의 대응이 공존한다. EU 차원의 이민정책은 회원국 간 이민정책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은 회원국의 권한이 강한 정책 분야이고, 회원국 간 이민에 관한 입장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개별 회원국의 대응이 EU의 정책방향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본 장은 우선 EU의 역내 이민에 대한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역외국민의 EU 역내 진입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및 주요 회원국(및 영국)의 대응을 살펴본다. 터키는 EU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주요 경유국이다. 이민정책에서 난민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난민과 관련한 EU와 터키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아프리카 또한 역사적으로 EU와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EU 및 주요 회원국이 아프리카의 주요 이민 송출국들과 추진해 온 협력도 살펴본다. 끝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를 한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노동이민 유입에 대한 한국의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장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U 차원의 법체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U의 법령은 1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과 2차적 입법(secondary legislation)으로 구분된다. 1차적 입법은 EU의 조약(treaty)을 가리키는데, 이는 EU 차원의 모든 일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특히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조약에 근거해서만 입법을 할 수 있다. EU의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게 비준을 받고,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6] 2차적 입법은 다시 세분화되는데, 대표적으

로 규제(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이 있다. 규제는 그 자체로 EU 전역에 적용되지만, 지침은 그 자체가 적용되지는 않고, 개별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7]

1. 역내 이민[8]

EU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EU기능조약(TFEU: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45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은 EU 역내에서 노동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EU 회원국 국민은 타 회원국에서 노동자로서 해당 국가의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라고도 불리는 'EU 조약(TEU: Treaty on European Union)' 제20조와 제21조는 EU 회원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EU 시민권의 개념을 수립하고, EU 시민에게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역내 이동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2차적 입법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Directive 2004/38/EC, Regulation(EU) No 492/2011, Directive 2015/54/EU 등은 상기한 자유로운 역내 이동 및 거주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경제지역수립협정(Agreement creating the European Economic Area)」 및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에 따라 이동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

6) European Union, "EU Treat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7).
7) European Union, "Regulations, Directives and Other Ac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8)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절의 내용은 European Commission(2020), pp. 15-16을 참고하였다.

위스)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상기한 노동이동의 자유가 적용되는 지리적 범위는 EU 및 EFTA 4개국이다.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가. 법적 근거

EU는 TFEU의 제79조와 제80조를 근거로 역외국민에 대한 '공동이민정책(common immigration policy)'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이민정책 영역은 크게 일반이민(regular immigration), 통합(integration), 불법이민 대응(combating irregular immigration),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으로 구분된다.[9] 일반이민 분야에서는 역외국 국민의 역내 입국 및 거주를 위한 조건, 개별 회원국의 장기비자 및 거주허가 발급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다. 통합 분야에서는 개별 회원국(*A*국)이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역외국 국민의 자국(*A*국) 사회 내 통합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불법이민 대응 분야에서는 불법이민, 무허가 거주 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재입국협정 분야에서는 입국 자격이나 체류 자격 없이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외국 국민의 귀환 협정을 해당 역외국과 체결한다.

9) European Parliament, "Immigration Polic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4. 29).

나. 합법이민[10)]

합법이민(legal migration)이란 문자 그대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이민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불법이민의 반대이다. 합법이민에 관한 EU 차원의 법령은 대부분이 지침(directive)이다. 개별 회원국에 실제 적용되는 것은 해당 지침을 기반으로 개별 회원국이 실시한 국내입법이므로, 회원국 간 제도의 차이가 크고,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영향력이 더 크다.

합법이민과 관련된 EU의 대표적인 제도로 'EU 블루카드 지침(EU Blue Card Directive)'을 꼽을 수 있다. EU는 고숙련노동자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지침을 도입하였다. 고용계약서가 있고, 숙련도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신속심사절차를 통해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블루카드는 거주 및 노동허가증에 해당한다. 또한 EU 역내 이동도 가능하고, 가족 재결합(즉 역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자신과 결합하기 위해 역내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다.[11)] 그런데 앞서 설명한 지침의 특성상 블루카드의 발급조건이 회원국 간 서로 달라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2016년에 시작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가족 재결합과 관련하여, EU는 '가족 재결합 지침(Family reunification Directive)'을 두고 있고, 장기거주자에 대한 '장기거주자 지침(Long-Term Residents Directive)'도 두고 있다.[12)] 장기거주자 지침은, EU 역내에서 연속된 5년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역외민에게 EU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위(EU long-term resident)와 고용, 교육, 직업훈련,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 재결합 지침은 영

---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주제는 European Commission, "Legal Migration and Integr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을 참고하였다.
1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9).
1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3a, 2003b).

국, 아일랜드, 덴마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opt-out).

EU는 사내파견 및 계절노동자에 대한 지침도 두고 있다. 우선 '단일 허가 지침(Single Permit Directive)'을 통해 이민절차 간소화, 회원국 간 이민절차 조화, 회원국 간 절차 단일화를 위한 원칙, 역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 보장 등을 추구하고 있다.[13] 또한 EU 역외국에서 고용되어 EU 회원국 내 자회사에 3년 이하의 기간으로 발령받은 역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파견자 지침(Intra-Corporate Transferees Directive)'도 두고 있다. 이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의 관련 법령을 단순화하여, EU 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그렇게 고용된 역외 노동자가 EU 역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14] 또한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절노동자 지침(Seasonal Workers Directive)'도 두고 있다. 계절노동자란 추수 시기, 수확 시기 등 일시적으로만 노동이민을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계절노동자 지침은 역외국 출신 계절노동자에 대한 착취 방지, 건강 및 안전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15]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합법이민의 적합성 확인(Fitness Check on Legal Migration)'을 통해 합법이민 관련 제도의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부가가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16] 또한 최근에는 역외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에게도 동등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을 목적으로 '유럽 숙련 의제(European Skills Agenda)'를 발표하기도 하였다.[17]

---

1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1).
1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4b).
1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14a).
16) European Commission, "Legal Migration Fitness Chec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17)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kills Agend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2).

다. 불법이민 및 난민

불법이민 및 난민을 다루기 위해 EU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GAMM: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18] GAMM의 목적은 △ 합법이민 체계화 및 이동 관리 △ 불법이민 예방 및 대응, 인신매매 근절 △ 이민이 개발에 미치는 효과(development impact) 극대화 △ 국제 보호 및 난민의 외적 요인(external dimension) 개선 등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EU는 정치적 수단(양자 간 및 지역 간 정책 담화, 실행계획 등)과 법적 수단(사증 발급, 귀환협정 등)을 사용하고 있고, 상대국 지원(운영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도 하고 있다. GAMM은 모든 역외국에 동등하게 적용되나, EU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역외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19] 특히 EU의 남부 및 동부에 위치한 인접국, EU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중요한 이민경로에 위치한 국가, 주요 이민 송출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05년 발족 당시에는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 초점을 맞춘 우선순위 행동'이라는 부제가 붙었을 정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초점이 점차 동유럽까지 확대되었다.[20]

---

18) European Commission,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19) 대표적으로 △ 라바트 프로세스(Rabat Process)로 대표되는 대아프리카 관계 △ 프라하 프로세스(Prague Process)로 대표되는 대동유럽 관계 △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국 △ 부다페스트 프로세스(Budapest Process)로 대표되는 실크로드 국가들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 프로세스의 참여국은 27개 EU 회원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옵서버 국가),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옵서버 국가),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캐나다(옵서버 국가), 중국(옵서버 국가), 조지아, 인도(옵서버 국가), 이란(옵서버 국가), 이라크(옵서버 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러시아연방, 세르비아, 스위스,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옵서버 국가),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Budapest Proc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참고.

20) 2005년 발족 당시 공식 명칭은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Priority Actions Focusing on Africa and the Mediterranean'이었다.

GAMM의 대표적인 정치적·법적 수단으로는 '이동성 파트너십(MP: Mobility Partnership)'과 '이민 및 이동성에 대한 공동 어젠다(CAMM: Common Agendas on Migration and Mobility)'가 있다. MP와 CAMM의 체결 상대방은 개별 역외국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MP는 주로 EU의 국경에 인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비자 활성화, 재입국 허가 협정 등을 협력 수단으로 사용한다. EU는 이민 관리, 인신매매 단속 등에 대한 MP 체결국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성 파트너십 기금(MPF: Mobility Partnership Facility)'도 운영하고 있다.[21] 개별 MP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반면에 CAMM은 EU의 경계에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EU는 현재까지 9개국과 MP를 체결하였고, 2개국과 CAMM을 체결하였다.[22] MP 체결국(총 9개국) 중 아프리카 국가는 3개국(카보베르데, 모로코, 튀니지)에 불과하지만, CAMM 체결 국가는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이다(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러한 정치적·법적 수단 외에도, EU는 상대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실무적 지원을 하고 있고, 상대국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시민사회 및 국제기구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집행위원회는 2004~13년간 약 400개의 이민 관련 사업에 1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지중해 남부 국가들이 주로 수혜를 받았다.[23]

2014년부터 역외국민의 유입이 급증하자 EU 정상회의(2014년 6월)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이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24] 고숙련 역외민을 EU로 유치하기 위해 합법적 이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

21) European Commission, "Mobility Partnership Facility(MPF)"(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22) MP 체결국은 카보베르데, 몰도바, 조지아, 아르메니아,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요르단, 벨라루스이다. European Commission,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23) *Ibid.*
24) European Council(2014), "Council Conclusions of 26/27 June 201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고, 난민 보호, 불법이민 대응, 국경 관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후 2015년에 EU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 규모가 최고조에 달하자 불법이민유입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이민 의제(European Agenda on Migration)'를 발표하였다.[25] 이 의제는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 불법이민에 대한 보상 축소 △ EU의 역외 국경 관리 △ 강력한 공동 난민 정책(common asylum policy) 개발 △ 합법이민 관련 새로운 정책 개발이다.[26]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이민 및 난민 관련 협정을 발전시키고자 2016년, 2018년, 2020년에 걸쳐 협정안을 제안하였다. 2016년과 2018년의 제안은 회원국 간 입장 차이, 특히 비세그라드 4개국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2020년에 제안된 '신(新)이민 및 난민협정안(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은 회원국 간 형평성과 일반적인 체계를 잘 갖추었고, 난민에 맞추어져 있던 초점을 이민 전반으로 확대하였다.[27] 예를 들어 기존에는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 5년이 지나야만 자유로운 역내 이동이 가능했는데, 2020년 협정안은 이를 3년으로 단축하였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난민 및 이민자가 현지 사회에 통합할 통기를 강화하였다. 또한 EU 차원의 이민 및 난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신청 문서 기준이 아닌 개별 신청인 기준 데이터베이스인 Eurodoc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안 역시 이민 및 난민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국가들과 중간 기착지 국가들(예: 비세그라드 4개국) 간 입장 차이에 의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5) European Commission(201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26) 이 의제가 발표된 후 2018년 상반기까지는 난민유입 관리가 가장 큰 화두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는) 사증 발급 요건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Agenda on Migration-Legislative Documen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27) European Commission(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a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5).

이 외에도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민의 현지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계획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특히 교육, 노동시장, 훈련, 주거 및 보건 등의 기본적인 생활, 사회 참여 및 소속감 등의 측면에서 개별 회원국이 역외민의 현지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8]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합법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개별 회원국도 고숙련노동자 유치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격을 완화해 왔다.[29] 예를 들어 독일은 노동이민자의 고용계약 허용조건 완화, 해외 취득 자격 인증 절차 및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창업가들이 간단한 심사만 통과하면 4년간 프랑스에서 일하고 거주하도록 허용하고, 이주비용 일부와 사무공간도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스페인계 아르헨티나인을 대상으로 기술,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간 이상 수준의 숙련도를 가진 노동자에게 '구직비자(job-search visa)'를 발급하는 법안을 도입하였다. 체코는 고숙련 역외민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Programme Highly Qualified Workers)을 도입하였다.[30]

또한 자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특히 언어장벽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라고

---

28) European Commission(201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on the integration of third country National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5).

29) 자격 완화 국가(10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 행정절차 간소화 국가(5개국): 벨기에, 독일,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European Commission, "Annual Report on Migration and Asylu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28).

30) *Ibid.*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장기 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과정에 언어과정을 포함하였고, 프랑스는 2019년에 언어 훈련기간을 기존의 200시간에서 400시간까지 늘렸다.[31]

다음에서는 EU 역내 대표적인 이민유입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이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는 하였으나,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은 기존 EU 체제가 영국에 상당 부분 지속되는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이고, 아직 역외국으로서 영국의 관련 제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영국의 제도와 정책도 EU 역외국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한편 '비세그라드(Visegrád) 4개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EU 역내 한국 기업들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32] 이들의 노동이민 관련 제도도 한국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비세그라드 4개국의 관련 제도의 특징도 간단하게 살펴본다. 터키는 EU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주요 경유국이다. 이민정책에서 난민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난민과 관련한 EU와 터키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가. 독일

역외국민의 독일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독일 거주법(German Residence Act; AufenthG)」이고, 관련 행정은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이 담당한다. 역외국민이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비자와 거주허가가 있어야 한다. 노동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독일

31) OECD(2019), p. 93.
32) 강유덕, 임유진(2016).

입국 전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일부 국적자(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미국)는 노동비자 없이도 노동시장 진입은 가능하지만 입국 후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33] 또한 연방노동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job offer)과 그 일을 대신할 인력이 없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독일인 직원과 고용조건이 유사해야 한다.[34] 한편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자유롭다. 단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무소(Ausländerbehörde)의 허가가 있을 경우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글상자 2-1]은 독일의 대표적인 거주허가 종류를 설명한다. 특징적인 것은 고학력자 및 고숙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주허가 종류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고학력자 및 고숙련자를 우대하는 것은 2020년 3월에 발효된 「숙련자 이민법(Skilled Immigration Act; Fachkräftezuwanderungsgesetz)」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법은 숙련노동자(Fachkräfte)를 위한 독일어 학습 지원, 행정절차의 효율화 및 신속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35] 또한 독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숙련이민자는 상기한 거주허가 취득 의무를 면제받는다.[36] 이때 고학력자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도 숙련노동자로 분류된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숙련노동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들이 독일의 연구개발 및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37] 또한 시리아 내전

---

33) Schengen Visa Info, "Germany Employment Visa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s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2).

34) Bundesagentur für Arbeit, "Admission to the German Labour Marke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2).

35) '숙련노동자'는 독일에서 대학교육을 마쳤거나, 관리자, 경영진, 전문가 집단, 독일에서의 고급 직업훈련 혹은 해외에서 동등한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 p. 9.

36)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 정착허가를 보유한 고숙련노동자 △ 연금보험제 평가 상한선(2020년 5만 5,200유로)의 2/3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는 EU 블루카드 소지자 △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연구보조, 방문연구학자, 엔지니어, 기술자, 교사 △ EU 블루카드 혹은 거주허가를 지니고 있으면서 독일에서 2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한 합법 노동자 △ EU 블루카드 혹은 거주허가를 지니고 있으면서 거주용인(toleration) 또는 임시 거주허가 지위로 독일 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등이다.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 p. 9.

이후 난민유입이 폭증하며 비숙련노동자 유입이 급증하자,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숙련노동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38]

글상자 2-1. 독일의 거주허가 종류별 특징

- EU 블루카드: 학자나 그와 유사한 자격을 지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피고용인에 대한 거주허가
- ICT 카드: 역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관리자, 전문가, 연수생 등의 형태로 독일 내 자회사에 파견된 피고용인에 대한 거주허가
- 모바일 ICT 카드: 타 EU 회원국에서 ICT 카드를 취득하고 독일에 장기(90일 이상) 파견된 피고용인에 대한 거주허가
- 직업훈련 포함 고숙련노동: 고용에 직업훈련이 포함된 고숙련 피고용인에 대한 거주허가
- 학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중 블루카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거주허가
- IT 전문가: 전문적 자격요건은 없으나, IT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대한 거주허가
- 정착허가: 기간과 장소와 얽매이지 않고 영구 정착 및 자영업 가능
- EU 영주권: EU 역내에서 연속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역내 영구 거주 및 취업 가능

자료: Bundesagentur für Arbeit(2020), p. 7.

나. 프랑스[39]

역외국민이 프랑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이 있어야 하고, 노동허가, 취업비자,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이 3가지 행정절차 중 순서상 노동허가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노동허가는 해당 역외국민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해당 지역노동청(DIRECCTE: 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37)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2019), p. 159.
38) Deutsche Welle(2020. 3. 1), "Germany's New Labor Immigration Law Explaine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2).
39)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내용은 Expatica, "Work in France: A Guide to French Visas and Permit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를 참고하였다.

du Travail et de L'emploi)에서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고용주는 취업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역내인 중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노동허가서가 프랑스 이민통합국(OFII: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해당 역외국민 본국의 프랑스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송부된다. 이후 해당 역외국민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40] 취업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프랑스에 입국을 하고, 거주지의 경시청(préfecture)에서 체류증(carte de séjour)을 받으면 거주허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한 역외인은 '수용 및 통합 계약(CAI: Contrat d'Accueil et d'Intégration)'에 서명해야 하고, 프랑스의 제도, 국가관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가 자유롭다. 그러나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행정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에는 노동이 허가되지 않는다. 단 6개월 이내에 난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41] 한편 반(反)난민을 주장하는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의 지지세가 확산되자 2019년에 프랑스 정부는 다소 강경한 이민정책을 발표하였다.[42] 이 정책에 따라 2020년 여름부터 지역과 직업에 따른 역외국 출신 이민노동자 할당제를 도입하였다.[43]

[글상자 2-2]는 프랑스의 취업비자 종류별 특징을 요약한다. 앞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제도도 고숙련노동자에게 우호적이라

---

40) 취업비자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프랑스 이민법(CESEDA: le Code d'Entree et du Sejour des Etrangers et du Droit d'Asile)」이다.

41) European Commission(2019), "Organization of Migration and Asylum System in France Overview"(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42) "France Announces Tough New Measures on Immigration: With Municipal Elections Approaching, President Emmanuel Macron Hopes the Stricter Stance Will Lure Voters Away from the far Right"(2019. 11.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4).

43) Deutsche Welle(2019. 11. 5), "France to Set up Regional Quotas for Foreign Worker Permi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6년에 재능비자를 도입하는 등 최근 들어 고숙련노동자 유치에 한층 적극적이 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글상자 2-2. 프랑스 취업비자 종류별 특징

- 일반 취업비자(salarié/travailleur temporaire): 고용주가 EU 역내에서 적합한 노동자를 찾지 못하였고, 석사학위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에 해당하는 거주허가 신청 가능
- 재능비자(passeport talent): 기업 임원, 전문직 등 프랑스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체육, 인문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잠재력이 있는 경우 4년간 갱신 가능한 거주허가 신청 가능. 동반가족도 노동 가능. CAI 서명 면제
- EU 블루카드: 고숙련노동자 대상. 고등교육 기관에서 3년 이상의 학업을 증명하는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1년 이상의 노동계약 및 프랑스 평균 임금(2017년부터 연 5만 3,836.50유로)의 1.5배 이상인 경우. 거주허가 3년. CAI 서명 면제
- 특별경제기여비자(exceptional economic contribution permit): 1,000만 달러 이상의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 대상. 10년 거주허가 신청 가능. CAI 서명 면제
- 과학자 및 연구자 비자(scientists/researchers permit): 석사학위 이상, 대학에서 연구 및 강의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1년, 최장 4년까지 매년 갱신 가능
- 계절노동자비자: 3개월 이상의 계절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효기간 3년, 이후 3년간 갱신 가능. 한 해 최대 6개월까지 거주 및 근로 가능
- 오페어(au pairs)비자: 17~30세 사이, 프랑스의 호스트 가족과 '오페어 계약(accord de placement)'을 맺고 해당 지역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어학기관 입학증 필요. 오페어 계약은 외국인 가정에서 일정 시간 보육을 하는 대가로 숙식과 급여를 받고, 자유시간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나 유모(nanny)보다 근로의 비중이 작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 Immigration Portal, Blue Card, France"; Expatica, "Work in France: A Guide to French Visas and Permits"(모든 온라인의 자료의 검색일: 2020. 10. 14).

다. 영국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EU 및 EFTA 회원국 국민은 브렉시트 이행기(transition period)가 종료되는 2021년 1월부터는 비자 없이 영국에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의 경우, 기존에 영국에 거주하던 경

우에는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며, 그 이후에는 'EU Settlement Scheme'을 신청해야 한다.[44]

EU 역외국민이 영국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비자와 거주허가가 필요하다. 취업비자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이 있어야 하고, 취업비자가 필요 없는 영국인(및 영국이 EU 체제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은 EU 역내인) 중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국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증인(고용주)의 증명서(CoS: 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필요하다.[45] 앞서 살펴본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가 자유롭지만, 아직 난민 지위 부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다.[46]

영국정부는 2020년에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점수 기반 이민제도(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갖춘 경우에만 취업비자가 발급되고, 특히 숙련노동자에게 점수가 부여된다.[47] 또한 현재는 소득 하한이 연 3만 파운드인데, 이 기준이 2만 5,600파운드로 낮아진다.[48] 연소득이 하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해당 직종에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고, 영어 구사 수준이나 학력이 높은 경우 가산점을 부과한다.[49] 이때 숙련노동력 부족 직종은 대표적으로 과학자, 공학자, IT 전문직, 의료인, 그

---

44) GOV.UK, "Visas and Immigration, Work in the UK, Apply to the EU Settlement Scheme (Settled and Pre-Settled Stat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45) GOV.UK, "Visas and Immigration, Work in the UK, General Work Visa(Tier 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46) Expatica, "Guide to Visas and Immigration in the UK"(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47) GOV.UK, "The UK's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policy state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48) "How Will the UK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Work?"(2020. 12.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2. 14).
49) The Migration Observatory, "Q&A: The UK's New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after Brexi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래픽 디자이너, 요리사 등이다.[50]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고, EU 회원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이 숙련노동력을 우대하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던 분야에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51]

라. 비세그라드 4국

폴란드의 경우, 앞서 살펴본 독일 및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고숙련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외국민이 폴란드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가 필요하나, 몇 가지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대학, 폴란드 학술원(Polish Academy of Sciences),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거나, 폴란드 내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경우에 노동허가를 면제해 준다. 또한 EU나 폴란드 정부의 출연금에 기반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노동허가 취득이 면제된다.[52]

폴란드의 노동허가 종류는 총 6가지이다. A형은 현지 고용주의 역외국민 직원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고, 동일 직무 및 업무를 하는 폴란드인보다 임금이 낮아서는 안 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경우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B형은 현지 고용주의 역외국민 임원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나 피고용인이 25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짜리로 발급이 가능하다. C형과 D형은 외국 고용주의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C형은 폴란드 내 지점으로 30일 이상 파견된 경우가 대상이고, D형은 폴란드 내 지점 없이 임시 근무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E형은 외국 고용주의 피고용인 중 앞서 설명한 4가

50) GOV.UK "Immigration Rules, Immigration Rules Appendix K: Shortage Occupation lis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51) 「영국, 이민규제 대폭강화…숙련기술 · 영어능력 본다」(2020. 2.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2. 19).
52) Euraxess Poland, "Work Permit(for Non-European Citize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상이다. S형은 2018년에 도입되었는데, 계절노동자가 대상이다.[53]

체코의 경우, 역외국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Employee Card'가 필요한데, 앞서 살펴본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이 Employee Card는 거주 및 노동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54] 앞서 살펴본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역외국민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가 체코나 EU 역내에 적임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고용주가 역외국민 채용계획을 노동청(Ministerstvo Práce a Sociálních Věcí)에 알리면, 노동청은 해당 일자리를 30일간 EU 회원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고한다. 적절한 EU 회원국 국민이 이 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야만 역외국민에게 기회가 돌아간다.[55] 역외국민은 Employee Card를 자신의 본국을 관할하는 체코 대사관에 신청하고, 발급은 체코 내무부가 담당한다. 이때 해당 역외국민이 Employee Card 수령을 위해 체코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비자가 발급된다.[56]

슬로바키아 또한 거주 및 노동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는 '단일허가(Single Permit)' 제도를 두고 있다.[57] 단일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노동허가 절차는 앞서 살펴본 폴란드 및 체코의 경우와 유사하다. 노동허가를 승인받으면, 해당 역외국민은 자신의 본국을 관할하는 슬로바키아 대사관(외교사절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해당 대사관에서 비자를 수령하고, 슬로바키아 입국 후 3일 내에 관할 '외국인 경찰국(Alien Police Department)'에 신고해야 한다.[58]

---

53) Poland Unraveled, "How to Get Work Permit in Polan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54)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of the Czech Republic, "Third-Country Nationals, Employee Car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55) Prague Referral, "Blue Card, Employee Card or work permit in Czech Republic: What's the Differenc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56) Expat Arrivals, "Work Permits For Czech Republic"(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57) European Commission, "EU Immigration Portal, Slovakia"(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역외국민이 헝가리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가 필요한데, 이때 한 해에 발급 가능한 전체 노동허가 건수가 정해져 있다. 이 상한은 전년도의 외국인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국가경제부 장관(Minister for National Economy)이 결정하고, Official Hungarian Gazette (Magyar Közlöny)에 공시된다. 앞서 살펴본 폴란드의 경우와 유사하게, 헝가리 또한 고용주가 역외국민 채용계획을 노동청(Munkaügyi Központ)에 알리면, 노동청은 해당 일자리를 15일간 공고한다. 이를 통해 역외국민 채용의 필요성이 입증된다.[59]

헝가리의 노동허가 취득절차는 일반절차와 간편절차로 구분된다. 일반절차 중 개인 노동허가는 노동청이 관할하고, 공동 노동허가는 이민국이 관할한다.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 갱신이 가능하다. 노동허가 취득 후 해당 역외국민은 자신의 본국을 관할하는 헝가리 영사관(Magyar Konzulátus)에 노동비자를 신청한다. 90일 넘게 헝가리에 거주하려는 역외국민은 노동허가 취득 후 거주허가(Tartózkodási engedély)를 신청한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거주허가는 필요하다.[60]

마. 터키

EU는 2013년 12월에 터키와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을 체결하였다.[61] 재입국협정은 난민유입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 EU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EU에 유입된 난민 또는 불법이민자가 터키를 경유했

58) 외국인 경찰국은 2019년 4월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59) Just Landed, "Working in Hungar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60) Just Landed, "Working in Hungary"; ShieldGEO, "Immigration & Work Permits"(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0. 10. 14).
61) European Commission(2014. 6. 26), "Statement by Cecilia Malmstrom on the ratification of the EU-Turkey readmission agreement by the Turkish Parliamen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다는 것이 증명되면 EU는 재입국협정을 근거로 해당 이민자를 터키로 돌려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EU는 터키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 주었다.

또한 EU는 그리스에 발이 묶여 있는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기 위해 터키와 난민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는 신규 불법이민자를 터키로 송환하고, 그 대신 터키 내 난민 중 EU로 불법이민을 시도한 적이 있는 난민을 1 대 1로 맞교환하여 EU에 수용한다(단 7만 2,000명 상한). 또한 EU는 터키에 60억 유로를 지원하고, 터키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며,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62] 이에 더해, 최근 유럽의회는 터키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4억 8,500만 유로 규모의 추가적인 지원을 승인하였다.[63]

4. EU-아프리카 간 협력

가. 다자협력

1) 라바트 프로세스(2006년)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의 대EU 이민은 지브롤터 해협이나 카나리아 제도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주를 관리하기 위해 스페인, 프랑스,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이 2006년에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럽-아프리카 대화'를 시작하였다. 모로코의 라바트에서 시작되어 '라바트 프로세스(Rabat

62) European Council Press Release(2016. 3.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4).
63) "EU Approves $545M of Aid for Refugees in Turkey"(2020.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4).

Process)'라고 불리는 이 대화는, 참여국이 점차 확장되어 서아프리카-중부아프리카-북아프리카-유럽에 걸친 이주경로에 있는 이민 송출국, 경유국, 유입국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64] 그 결과, 2020년 현재 28개 아프리카 국가, 29개 유럽 국가, EU,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와 각국 시민단체는 옵서버 역할을 하고 있다.[65]

라바트 프로세스는 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고안하고 실행하며, 이러한 사업, 정책, 우수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틀의 기능을 한다. 특히 2015년 발레타 정상회담(Valletta Summit)에서 채택한 '발레타 공동 행동계획(Joint Valletta Action Plan)'의 이행에 대한 감시도 라바트 프로세스가 맡고 있다.[66]

구체적으로 대화의 틀은 장관급 회담, 고위급 회담, 주제별 회담으로 구성된다. 주제별 회의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 학계 등 각 분야의 실무자들이 비자 활성화, 디아스포라, 인신매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부·지역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장관급 회담의 의제를 결정한다. 장관급 회담은 3년마다 개최되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발표한다. 라바트 프로세스는 본 장의 제2절에서 설명한 GAMM의 MP와 보완 관계에 있다.[67]

2) 발레타 선언·행동계획(2015년)

시리아 사태에 따른 대유럽 난민 유입 급등에 대응하고자 유럽과 아프리카

64) Rabat Process, "The Rabat Proc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65) Rabat Process, "Our Partne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66) Rabat Process, "The Rabat Proces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67) EU, ICMPD, and FIIAPP(2015), p. 14, pp. 25-26, p. 30.

는 2015년에 몰타의 발레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발레타 선언 ·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68] 발레타 선언 · 행동계획은 대체로 대유럽으로 유입 이주민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동계획은 특히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제13조 및 발레타 선언에 따라 자국민의 재입국을

표 2-1. 발레타 행동계획

분야	주요 내용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화, 비정규 이주 및 강제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 청년 취업 기회 창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개발 촉진 - 도시 발전과 사회복지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 장기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지원 - 안전하고 저렴하며 합법적인 송금 촉진 · 2030년까지 이주민 송금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 - 디아스포라의 본국 투자 촉진 - 아프리카(특히 사헬 · 차드호수, 아프리카의 뿔 지역) 내 인권침해와 국내이주(internal displacement)를 야기하는 무력충돌 예방, 테러리즘 대응 역량 강화
합법적 이주와 이동성	- 유럽-아프리카 간 정식 경로를 통한 이주 장려 · 출국 전 외국어 교육, 직업훈련, 인권교육 실시 - 유럽-아프리카 간 학생, 연구자, 기업가 이동 촉진 - 국가적, 지역적 이주전략 수립 · 이행 지원 - 비자 활성화 협상과 재입국허가 관련 논의에 참여 · 입국절차 간소화(단기 복수비자 발급 확대, 수수료 일부 면제) · 특정 방문객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활성화 · 가족결합을 포함한 합법적 이주 활성화
보호와 비호	- 난민, 이재민, 비호 신청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장기 난민과 이재민의 현지 사회통합 지원 - 최초 비호 제공국, 경유국, 목적지 국가의 역량 강화
비정규 이주, 밀입국, 인신매매 근절	- 국제협약과 합치되는 법과 제도의 수립 및 이행 지원 - 인신매매 관련 정보수집 및 공유 강화, 인터폴 협조 - 유럽-아프리카 간 해상경비 공조 네트워크 설립 - 비정규 이주의 위험 관련 정보 제공
귀환, 재입국허가, 재통합	- 해외노동자의 귀환 활성화, 비정규 이주자의 본국 사회 재통합을 위한 협력 강화 - 귀환 및 재입국에 방해가 되는 신분증 미소지 문제 관련 공조

자료: Valletta Summit(2015a), "Valletta Action Pl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68) Valletta Summit(2015b), "Valletta Political Declaratio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 이주를 막기 위해서는 송출국의 상황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서 참여국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자원을 활용하게 되며, EU는 여기에 더해 아프리카를 위한 긴급신탁기금(EUTF: EU Emergency Trust Fund for Africa)을 설립하였다. 긴급신탁기금은 송출국 내 경제적 기회 창출, 취약계층의 회복력(resilience) 향상, 안보 및 개발 등을 통해 비정규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사용된다.[69] 아프리카 국가들은 EU의 지원 의사에는 긍정적이었으나, 원조를 재입국허가 및 국경관리 강화와 연결하는 EU의 'more for more approach'에는 다소 회의적이었다.[70]

공식자료에 따르면 EUTF는 2020년 현재 47억 유로 규모로 EU에서 88%, 개별 EU 회원국 및 기타 공여기관에서 12%의 자금을 충당하여 26개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말리를 비롯하여 사헬 · 차드호수 지역 12개국에서 20억 달러,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의 뿔 지역 9개국에서 16억 달러, 모로코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5개국에서 8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을 통틀어 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이주관리 개선으로 전체 지원금의 31%가 사용되었다. 한 예로, 2017년 5월에서 2019년 4월 사이 리비아,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 지부티 출신 이주자 6만 6,700명의 자국 귀환을 지원하였으며, 이미 귀국한 지원자 8만 700명을 지원하였다. 경제적 기회 증대 분야에도 전체 지원금의 21%가 사용되었으며, 아프리카 각국에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7만 7,000명의 소득 창출 활동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유럽으로 이주한 아프리카인의) 귀환 및 재통합, 난민 관리, 신분증 및 주민등록 관리 개선, 인신매매 대응, 이주 관련 대화 지원, 아프

69) Valletta Summit(2015a), "Valletta Action Pl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3).
70) Gouveia and Amnaiy(2017. 3. 24), "Expert Voice: Taking Stock of the Joint Valletta Action Plan"(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9).

리카의 뿔 지역 및 사헬 · 차드호수 지역 안정화 노력을 6대 우선순위로 설정하였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도 이주 거버넌스 개선,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등의 분야에서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71] 새로운 6대 우선순위 분야에서도 EU의 관심은 아프리카인의 유럽 이주를 최대한 통제하려는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마라케시 선언 · 행동계획(2018년)

2018년 라바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5차 유럽-아프리카 장관급 회담에서 마라케시 선언 ·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마라케시 행동계획은 협력 프레임워크로 이주관리에 관한 각국의 노력을 조정(coordinate)하는 역할을 하나 구속력은 없으며, 행동계획에 따라 2018~20년 기간 동안의 대화 주제를 결정한다. 마라케시 행동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약속 메커니즘(commitment mechanism)'을 포함하고 있다. 마

표 2-2. 마라케시 행동계획

분야	주요 내용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화, 비정규 이주 및 강제이주의 근본 원인 해결	- 발전을 위한 정규 이주의 긍정적 영향 극대화 - 비정규 이주와 강제이주의 근본 원인 이해
합법적 이주와 이동성	- 청년 및 여성의 정규 이주와 이동성 촉진 -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장려
보호와 비호	- 난민과 강제 이주자의 보호 강화 - 난민과 강제 이주자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
비정규 이주 · 밀입국 · 인신매매 근절	- 국경 관리 및 밀입국 및 인신매매 대응 능력 구축 - 밀입국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
귀환, 재입국허가, 재통합	- 신원 확인과 비자 발급 능력 구축 - 안전한 귀환과 이민자의 지속가능한 재통합 장려

자료: ICMPD(2018), "Marrakesh Political Declanation and Action Plan 2018-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71) European Commission(2020).

라케시 행동계획은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합법적 이주와 이동성, 보호와 비호, 비정규 이주, 귀환 및 재입국허가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10대 목표 및 23개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72]

나. 양자협력

이동성 파트너십

EU가 이주 문제에 관해 역외 국가들과 협력하는 대표적인 정치적 수단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동성 파트너십(MP: Mobility Partnership)이다. EU는 역외국 중 불법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과적인 재입국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와 MP를 체결한다.[73] 2020년 현재 EU는 3개 아프리카 국가(카보베르데, 모로코, 튀니지)와 MP를 체결하였다. MP 체결에는 해당 역외국(협력국)과 EU 각각이 자신의 책무(commitment)를 이행해야 하는데, 협력국은 주로 대유럽 비정규·불법이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EU는 해당 역외국민의 이주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는 MP 체결 시마다 상황과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글상자 2-3]은 MP에서 협력국의 책무를 요약한다. 책무 중에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같이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또한 협력국은 EU에 불법입국을 하다 퇴거당한 자국민은 물론이고 자국을 통해 EU에 불법입국을 하다 퇴거당한 제3국민도 받아들여야 한다. 제3국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제법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소는 협력국에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2) ICMPD(2018), "Marrakesh Political Declanation and Action Plan 2018-2020"(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

73) European Commission(20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Circular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4).

글상자 2-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협력국(역외국)의 책무

- 자국민의 재입국을 위한 노력, 자국민 확인에 협조
- 자국을 통과하여 EU 역내에 도착한 제3국민 및 무국적자의 재입국을 위한 노력
- 특정 층을 겨냥한 정보전달 캠페인을 통한 불법이주(illegal migration) 경감 노력
- EU 국경 및 해양경비대(FORNTEX)와의 실무적 협력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
- 생체인식기술 적용 등을 통한 여행문서의 보안성 개선 및 위조 방지
- EU 회원국과 정보 공유
- 인신매매 및 밀수 근절 노력
- 비정규 이주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여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Circular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4).

이러한 협력국의 노력에 대응하여 EU 회원국은 해당 협력국에 대한 노동기회 확대, 역량강화 지원 등의 책무를 진다(표 2-3 참고). EU 회원국은 크게 합법적 이민 기회 개선, 이민관리 역량강화, 두뇌유출 대응, 순환이민·회귀이민 촉진, 단기비자 발급절차 개선·간소화 등 양국 국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때 이주는 경제적 이주가 초점이고, 필요시 유학이나 연수를 위한 이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세부사항은 대체로 개별 EU 회원국의 자발성에 맡긴다. 또한 EU 시민이 누리는 역내이동의 자유에 비해 협력국민에 주어지는 특혜가 제한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비자와 관련한 특혜는 해당 역외국의 전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특혜는 단기비자에 국한되어 있고, 장기비자나 노동기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를 강조하는 것 또한 협력국민의 장기 노동이민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U의 이러한 이주관리 체제는 협력국의 발전보다는 강력한 유럽의

이민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민 송출국과 경유국은 자국의 자원을 대유럽 이주 방지에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 대유럽 이주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EU가 제공하는 단기 노동이민 기회는 상기한 단점을 상쇄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이다.[74]

표 2-3. 이동성 파트너십에서 EU 회원국의 책무

협력 분야	주요 내용
협력국민의 합법적 이민기회 개선	- EU 시민에게 주어지는 역내 자유이동 특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국민의 경제적 이민 활성화 - 협력국민에게 자국 노동시장 접근 기회 확대 · 특정 국가에 대한 쿼터제, 일자리 매칭 - EU 시민, 터키 국민에 대한 우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확대된 특혜 부여 가능
협력국의 합법적 이민관리 역량강화 지원	- EU 회원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전달 - 학생, 연구자, 자원봉사자, 청년 전문가의 이동 지원 - 해외 취업이 유망한 사람에 대한 출국 전 언어 연수 - 협력국민과 EU 역내 일자리 간 매칭 서비스 제공 - 본국에 귀환한 해외노동자의 사회 재통합 지원 - 해외노동자의 원활한 본국 송금을 위한 협조체제 마련
협력국의 두뇌유출 위험 대응 및 순환이주 및 회귀이주 촉진	- 협력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해 EU 노동이민 특혜 제외 - 순환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양측 합의하에 계절노동자 및 단기노동자에게 본국 귀환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협력국민의 단기비자 발급 절차 개선 및 간소화	- 협력국 내 영사서비스 강화 · 비자 신청 담당 인력 증원 및 운영시간 연장 · EU 입국이 잦은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의 복수비자 발급 · 특정한 경우 비자 발급비용 면제 · 공동 비자신청센터 개소 - 특정 집단에 대한 비자 활성화 협정 협상

주: 이 조치들은 개별 EU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MP에 포함할 수 있는 조치의 예시일 뿐 의무는 아님.
자료: European Commission(20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Circular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4).

74) Pina-Delgado(2013), p. 411.

아프리카 국가 중 MP의 첫 사례는 카보베르데이다. 카보베르데는 동유럽의 몰도바와 함께 EU가 처음으로 MP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75] 2008년에 카보베르데와 EU는 MP를 체결하였고, EU 회원국 중에서는 카보베르데를 식민 지배했던 포르투갈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서명하였다.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도서국이지만, 1인당 GDP가 2018년 현재 3,635달러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1,589달러)의 2배가 넘는다.[76] 국가운영 ·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양호하다.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icators)의 모든 항목에서 카보베르데의 점수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우수하며, 한 예로 법치 항목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 하위 28.98%인 데 반해 카보베르데는 69.71%에 랭크되었다.[77] 특징적으로, 해외에 있는 카보베르데 노동자가 카보베르데에 거주하는 국민보다 많다고 추정되기도 한다.[78] 그러나 인구가 54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EU 역내 거주 이민자 중 카보베르데 출신은 매우 적다.[79] 따라서 카보베르데는 대유럽 이주 관련 협력유인이 크고, EU는 카보베르데인의 이주 기회 확대에 대한 부담이 작다. 카보베르데는 또한 노동, 국가운영 등에 관한 국제협약도 다수 비준 · 이행하고 있다. 특히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EU가 제공하는 무역특혜 중 GSP+ 수혜국이다. GSP+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

75) 양국이 같은 날 EU와 MP를 체결하였다. 별도 언급이 없는 한 EU-카보베르데 MP 관련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8), "Joint Declaration on a Mobility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Cape Ver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5).

76) Word Bank, "GDP per Capita(Current 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6. 30).

77) 2019년 수치이며,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거버넌스가 잘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World Bank, "World Governance Indicator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0).

78) Maastrich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2), "EU Migration Cooperation with Cape ver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4).

79) 2018년 수치이다. World Bank, "Population, Tota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

중에서 27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표준 GSP보다 더 큰 특혜가 부여된다.[80] 이로 미루어 EU는 카보베르데가 MP상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 2-4]에서 보듯이 EU와 카보베르데는 합법적 이주 활성화, 단기비자, 국경관리 등의 분야에서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카보베르데 사례에서 특징적인 점은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정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표 2-4. EU-카보베르데 MP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모니터링, 이주 관련 인식 개선	이주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이주 현황 분석
고용, 합법적 이주 관리 및 활성화, 통합	- 카보베르데 및 EU 회원국 내 노동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국 전 연수 실시 - 특정 집단에 속하는 카보베르데인의 취업(특히 단기 취업)을 촉진하되 순환이주 지향 - 특정 분야에 한해서 EU 회원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카보베르데 노동자 고용 허용
이동성 및 단기 비자	- 카보베르데인 대상 단기비자 관련 비자 활성화 협정 협상을 EU 이사회에 제안 - 카보베르데에 단기비자 신청을 위한 공동 비자신청센터 설립
이민, 개발, 디아스포라, 송금 간 연결	- 카보베르데 디아스포라가 본국 송금 및 본인이 체득한 기술을 통해 자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 - 고숙련노동자 유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이주 및 회귀이주 촉진 · 대카보베르데 송금비용 감소 및 투자 촉진 · 현지 개발 사업 지원
비호와 이민	카보베르데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비호 체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국경관리, 신분증 및 여행서류, 불법이주 및 인신매매 근절	- 불법이주 및 인신매매 근절, 국경통제 강화 - 정보교환, 연수, 국경관리 기술 등에서 카보베르데 경찰-Frontex 간 협력 - 인신매매 및 밀입국 네트워크 관련 카보베르데 정부-Europol 간 정보 교환 - 불법체류 중인 제3국 국민과 무국적자의 재입국 관련 협정 협상

자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8), "Joint Declaration on a Mobility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Cape Ver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5).

80) 정재욱, 정민지(2019), pp. 22~25.

카보베르데인의 유럽 이주에 대한 혜택은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있거나 단기비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EU-카보베르데 간 MP에서 대유럽 불법이주 근절 대책은 구체적인 반면, 그 대가로 카보베르데가 얻는 이동성 기회는 매우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81]

이러한 EU-카보베르데 MP는 일부 이행되었다. 예를 들어, 카보베르데 수도에 EU 공동 비자신청센터가 설립되어 2010년부터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비자센터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을 오갈 수 있는 단기비자를 발급한다. 비자센터 덕분에 카보베르데인이 해당 국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용이해진 면도 있으나 절차가 더 신속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카보베르데인 약 9,500명이 비자센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았다.[82] 카보베르데와 EU는 또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비자 활성화 협정과 재입국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에 모두 발효되었다.

모로코는 2013년에 EU와 MP를 체결하였다.[83] 모로코는 아프리카 국가 중 EU 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2019년 현재 약 133만 명이 EU 28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중 71%인 약 95만 명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로, 노동이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또한 서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할 경우에 거쳐 가는 주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84] 모로코가 GAMM 발족 당시부터 EU의 우선 협상대상이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조치이다. GAMM은 특히 인

81) Pina-Delgado(2013), p. 408.
82) Maastrich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2), "EU Migration Cooperation with Cape Verde"(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4).
83) 별도 언급이 없는 한 EU-카보베르데 MP 관련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Union Européenne et Maroc(2013), "Déclaration Conjointe Établissant un Parteneriat de Mobilité entrele Royaume du Maroc et L'Union Européenne et Ses États Membr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0).
84)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

표 2-5. EU-모로코 MP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이동성, 정규 이주, 통합	- 영사서비스 개선 및 셍겐비자 발급절차 개선 - 장기 복수비자 발급 가능성을 포함하여 비자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협력 - 비자 활성화 협정에 관한 협상 개시 - 모로코인의 연수, 연구 목적 EU 입국 및 체류 활성화 - EU 회원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모로코인의 사회통합 지원 - EU 역내 모로코 노동자의 사회보호권(social security right) 보장 - EU 회원국 내 노동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비정규 이주 및 인신매매 근절, 국경관리	- 제3국 국민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재입국 협정 협상 재개 - 모로코 정부의 비정규 이주관리 역량 개발 지원 - 정보교환, 연수, 국경관리 기술 관련 강화를 통해 인신매매 및 밀입국 네트워크 색출 및 근절 - 여행문서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추도록 지원 - 부모 미동반 미성년자의 보호 및 귀국 지원 -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모로코인의 자발적 귀국 지원
이주와 개발	- EU · 모로코 간 사회경제적 발전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모로코인의 본국 투자를 통해 자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장려 - 유럽 체류 모로코인의 전문기술 습득 지원 및 기술 취득 후 본국 귀환 촉진, 귀국 후 사회복귀 지원 - 두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이주 촉진
국제적 보호	- 모로코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비호 체계를 설립하도록 지원 - UNHCR과의 협력하에 모로코 관리의 비호 대응 역량 강화

주: 분야 중 initiatives horizontales은 큰 관련이 없어 제외함.
자료: Union Européenne et Maroc(2013), "Déclaration Conjointe Établissant un Parteneriat de Mobilité entre le Royaume du Maroc et L'Union Européenne et Ses États Membre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0).

신매매 근절사업 시행과 재입국 협정 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85] 모로코와의 MP에 참여한 유럽 국가는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이다.

EU-모로코 MP의 구성은 많은 측면에서 EU-카보베르데 MP와 유사하다. 먼저 EU-모로코 MP는 합법적 이주 관리 개선, 이주와 개발 관련 협력 강화, 비정규 이주 근절,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절차적으로 합법적 이주를 장

8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5), "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Priority Actions Focusing on Africa and the Mediterranean," p. 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7. 5).

려하고, 노동 이주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으며, 비정규 이주 및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논의되었다. 이주의 잠재력이 모로코와 유럽 국가들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협력 증대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카보베르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U-모로코 MP에서도 단기 체류자들의 순환과 귀환 및 재입국을 위한 효율적 정책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EU가 모로코 노동자의 장기 체류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노동이주의 경우 당사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EU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남겨 두었다.

EU는 MP 외에도 모로코의 국가 이주 및 비호 전략(National Strategy on Migration and Asylum)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모로코와 이주 관련 협력에 3억 4,20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2억 3,500만 유로를 EU 긴급신탁기금(EUTF)으로 충당하고 있다. EU 및 협력 기관들은 정부관계자들의 국경 관리 역량 강화, 자발적 귀국 지원, 이주자 대상 권리 교육 및 직업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대비 2019년 지중해 서부를 통해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아프리카 이주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EU는 이것이 모로코, 스페인, EU 간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86]

EU는 이러한 방식으로 양자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민들이 유럽으로 노동이민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카보베르데 및 모로코 간의 이주 관련 MP가 불법(illegal) 이주 및 비정규(irregular) 이주 근절에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환이주 및 재입국 협정 등 외국인 노동자의 EU 내 체류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비정규 이주 근절은 앞서 소개된 다자협력 틀인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행동계획, 마라케시 행동계획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민

86) European Commission(2020).

송출국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 늘어나는 노동이민 기회에 비해 국경관리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EU가 난민 및 이주자 관리를 EU 비회원국에 위탁(outsourcing)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있다. EU는 최근 난민 및 이주자 관련 절차를 EU 국경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북아프리카에 '지역 입국 플랫폼(regional disembarkation platform)'을 설립하려고 시도하다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로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EU가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 EU 국경 밖에서 이주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직 EU의 이주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87]

EU는 북아프리카 국가에 경제, 사회,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비정규 이주 통제 관련 협력을 얻어 내고 있다. 이미 북아프리카 국가의 다수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유럽으로 가는 이주자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주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경 통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만 커지면, 해당 국가들은 무분별하게 국경을 통제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알제리는 2017~18년 동안 유럽으로 가려던 아프리카 이주자 1만 3,000여 명을 국경에서 끌어내 사하라 사막에 버리는 등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이주를 통제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대규모 퇴거(mass expulsion)는 EU가 국경 통제 압박을 강화한 2017년 10월부터 크게 증가하였다.[88] 정규(regular)이주를 증가시키고 비정규이주를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 유럽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아프리카 이주민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알제리 사례처럼 부작용으로

87) Oxford Analytica(2019. 7. 18), "The EU will Discreetly Outsource Migration Manage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0).

88) "Walk or Die: Migrants Expelled from Algeria Forced on Deadly March through Sahara"(2018.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30).

이어지기 쉽다. 먼저 아프리카 이주자들이 비정규이주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조건 이민자를 색출하는 것보다도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아프리카, 유럽 양측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프리카를 위한 긴급신탁기금(EUTF)의 활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많은 선언에서 이미 내세운 목표인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이 개발 지원의 대가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유럽에서 추방된 제3국 국민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개발협력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지금까지 살펴본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를 한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본 절은 한국의 주요 관련 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므로,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제도와 숙련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비숙련노동자 대상 제도

비숙련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허가제이다.[89]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인력을 해외에서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외국인을 한

89)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고용허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제 정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일정 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점수제가 시행 중이며,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인원,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등의 항목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점수가 높은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 자격을 얻게 된다. 고용 자격을 획득한 사업주는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한 16개 인력 송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90] 한국에 취업하기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쳐 고득점순으로 구직 자격을 얻게 되며, 이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최종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 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 최초 입국 시 각종 절차에 필요한 행정비용, 위탁비용, 취업교육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단기순환원칙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한에 제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사업주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 10개월을 연장하여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가족동반은 불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없다.[91] 농축산업, 어업 분야,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소위 '성실 재입국' 제도로 불리는 '재입국 특례취업 제도'에 따라 3개월간 본국 귀국 후 재입국하여 4년 10개월을 더 근무할 수 있다. 단 성실 재입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본국에 3개월간 체류한 이후

90)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20), p. 22.

91) 단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한 사람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체류(F-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돌아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재입국 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을 면제받는다.[92] 우리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하여 이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심각했던 2020년 4월 당시 항공편 중단 등의 이유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져 사업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역시 출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4월 14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업기간 만료 예정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였다.[93]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자의 인권을

글상자 2-4.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변경 허용 사유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 및 폐업,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주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근로계약 체결 이후 취업교육 종료 전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장, 안전·보건상 조치 미이행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 사용자의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료: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92) 고용노동부 누리집,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3).
93) 정부24(2020. 4. 13),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3).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글상자 2-4 참고). 즉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해서 사업장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허가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사업장 변경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94]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한국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노동자 5인은 2020년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그동안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다수 시민단체가 대리인단에 참여하였다.[95]

외국인 노동자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노동자에게 새로운 사업장을 알선해 준다. 외국인 노동자는 3개월 내 의무적으로 다른 기업에 재취업해야 하며, 취업에 실패할 경우 강제 출국 대상자가 된다. 재취업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실직기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노동자가 불법체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지 않으며, 2020년 현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이 허용되어 있다. 세부 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냉장·냉동 창고업, 연근해 어업, 소금채취업, 축산업 등 단순노동이 필요한 분야가 대부분이다.[96] 고용허가제를 통

94)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 352(병합) 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헌집23-2, 623] .

95)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 조장" 헌법소원」(2020. 3.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3).

96)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고용허가제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한식 음식점업, 가구 내 고용활동, 여관업 등 더 많은 세부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다.

해 국내에 들어오는 노동자는 비전문 취업(E-9)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및 업종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다. 2020년 현재 일반 비전문인력(E-9 소지자) 및 재입국 취업자를 총 5만 6,000명가량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73%에 달하는 4만 700명이 서비스업에 배분되어 있다. 이어서 농축산업의 비율이 높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 100명 정도만 고용할 수 있다.

표 2-6. 고용허가제 체류자격별 및 업종별 할당 인원(2020년)

체류자격	합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 (E-9)	44,000=40,500+α(3,500)	30,130+α	2,280+α	90+α	5,300+α	2,700+α
재입국 취업자	12,000	10,570	20	10	1,100	300
합계	56,000=52,500+α(3,500)	40,700+α	2,300+α	100+α	6,400+α	3,000+α

자료: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제 정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30).

이 외에도 농·수산업 분야 계절노동자는 계절근로(E-8)비자, 선원은 선원취업(E-10)비자,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H-2)비자를 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다.[97]

한편 한국은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들의 취업 또한 허용하고 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한다.[98] 난민으로 인정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거주가 가능하고, 1회 3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이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난민은 취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회보

9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98) 「난민법」 제2조 제1호.

장, 기초생활보장 등의 처우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99] 인도적 체류자는 기타(G-1) 비자를 받게 되며, 인도적 체류를 부여한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다. 1회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인도적 체류자 역시 「난민법」 제39조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며, 난민지원시설 내에서 주거, 의료, 교육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에 입국하여 2018년에 난민 신청을 했던 예멘인 484명 중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100]

나. 숙련노동자 대상 제도

한국정부는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비숙련인력에서 숙련인력으로 자격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비전문취업(E-9) 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전문인력 대상 비자 중 특정활동(E-7) 비자의 일종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숙련인력과 달리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는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101] 이때 신청 조건이 '5년 이상' 국내 근무

99) 「난민법」 제2조 제3호.
100) 56명은 단순 불인정 처분을 받고, 14명은 신청이 직권 종료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2018. 12. 14).
10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온라인 자료, 검색일: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노동자는 최초 입국 시 4년 10개월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므로, 성실 재입국 취업을 한 경우에만 5년 이상 국내 근무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즉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성실 재입국을 하지 못한다면 자격 전환이 불가능하다. 숙련기능인력은 요건을 갖추면 영주 자격 및 국적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2016년부터 외국인 관리 강화 명목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F-2) 혹은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되었다.[102]

뿌리 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 기초 공정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E-7-4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2017년 8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점수제로 운영하고 있다. 업무 숙련도, 국내 근무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를 평가하며, 분기별로 100명씩, 연간 400명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단 이와 별도로 75점 이상 고득점자 100명, 전년 대비 10% 이상(10인 이상) 고용을 늘린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소속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부여한다.[103] 점수제 도입은 숙련기능인력 허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한국은 외국인 전문인력이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연구·지도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교수(E-1)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E-1 소지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아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연구(E-3)비자를 받게 된다.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외국어 학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려는 외국인은 회화

2020. 9. 28).

102) 대한민국정부 편(2015), p. 155.

10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9. 2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20), pp. 147~152, pp. 203~212.

지도(E-2)비자를 받게 된다.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자연과학 분야 전문지식 보유자, 산업상 특수기술 보유자는 기술지도(E-4)비자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전문직업(E-5)비자 발급 대상이다.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연예, 운동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는 예술흥행(E-6)비자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특정활동(E-7)비자를 받을 수 있다(표 2-7 참고).

비전문 취업(E-9) 소지자 등 비숙련인력은 사업장이 정해진 상태로 국내에 입국하지만, E-1~E-7 비자를 소지한 전문인력은 당장 국내에 일자리가 마련

표 2-7. 한국의 외국인 전문인력 대상 장기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 범위
교수 (E-1)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 (E-2)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 (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기술지도 (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 (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특정활동 (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자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연수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예술흥행(E-6)비자 소지자 중 호텔유흥(E-6-2)비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D-10비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투자 및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업투자(D-8)비자 소지자와 위의 전문인력에게만 발급되는 비자로, 전문인력은 상당히 우호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4]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비자 중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예술흥행(E-6)비자이다. 예술흥행비자는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전문 방송연기, 음악, 미술활동 등 「공연법」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예술연예(E-6-1)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은 이와 분리되어 호텔유흥(E-6-2)비자를 받게 된다.[105] 놀이공원 등 유원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도 호텔유흥(E-6-2)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호텔유흥(E-6-2)비자로 입국한 여성 중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여성들은 공연을 위해 입국했으나, 고용계약과 달리 접대 업무에 투입되고, 술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착취 피해에 크게 노출되었다.[10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입국시키거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성매매 강요, 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초청이 제한된다.[107] E-6비자 소지자 입국 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공연장소 시설 현황 확인서 등

10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10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20), p. 144.
106) 「E-6 비자는 성매매 허가증?」(2012. 11.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3); 「이주민정책이 여성 인신매매 사각지대 만든다」(2019. 4.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7).
10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4년부터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출입국관리법」,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법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다.[108] 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체류자격이 도과한 이후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은 본국 출국 전까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 체류자격이 종료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성매매 범죄 수사 및 배상 등의 문제로 해당 여성이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외국인 보호소 수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여성은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된다.[109] 최근 법무부는 공연장소 실태 조사, 외국인 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체류허가 심사 시 출입국 기관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한 인권침해 여부 확인 등을 골자로 한 호텔유흥(E-6-2)비자 개선안을 발표하였다.[110]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외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111] 불법체류자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보호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112]

108) 여성가족부(2014. 3. 26), 「예술 · 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강화」(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7).
10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110) 법무부 보도자료(2019. 12. 10).
1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112)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 학생 및 환자의 신상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입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다.[113] 이러한 통보의무 면제 조치는 외국인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조사 및 구금 등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114]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115]

11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
114) 법무부(2018), p. 13.
11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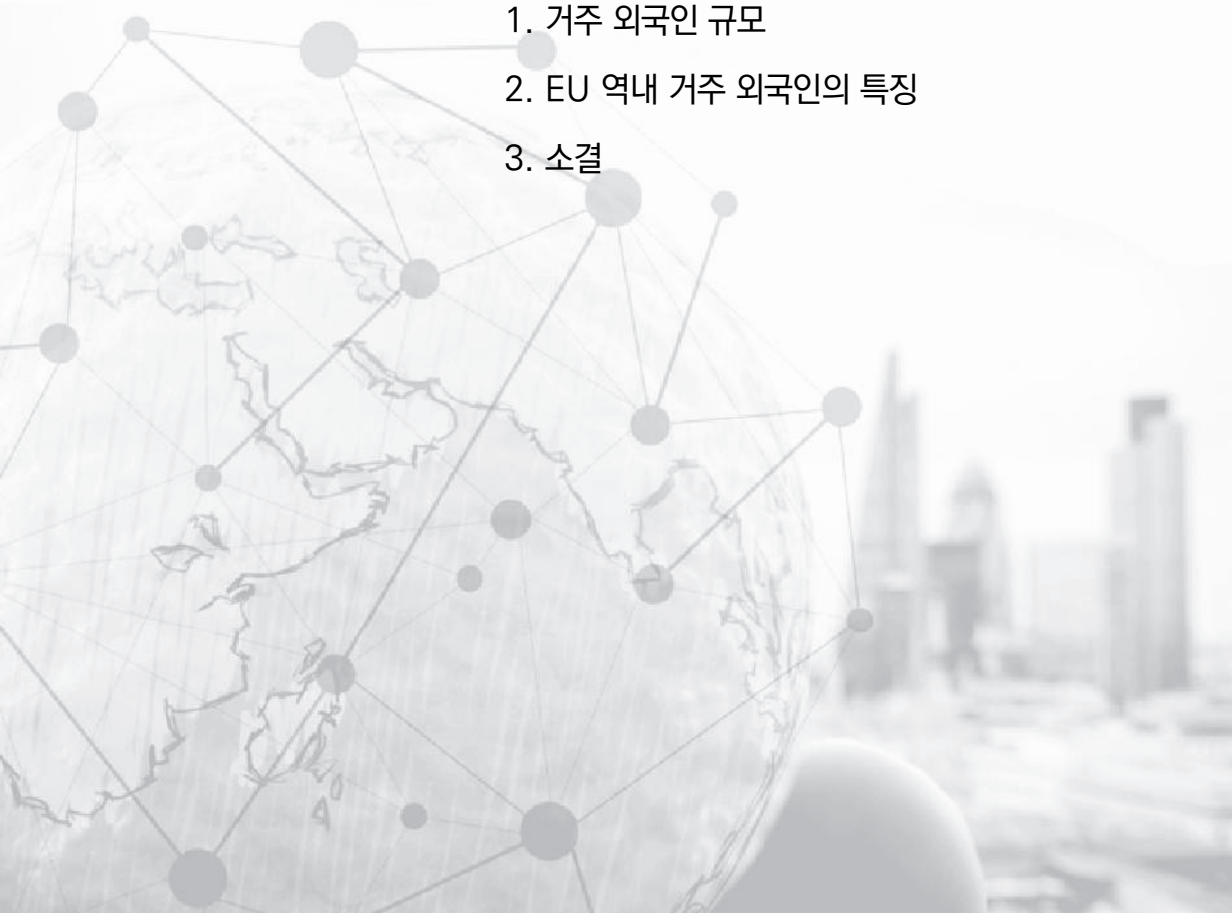

본 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보고 특징(stylized facts)을 파악한다. EU의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노동이동성에 대한 연례보고서에 해당하는 *Annual Report on Intra-EU Labour Mobility*를 발간하는데, 이 보고서는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을 노동이동에 포함한다(물론 다른 기준도 충족할 경우).[116] 이는 이민 관련 통계자료가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이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을 고려한다. 또한 본 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국까지 포함한 28개국을 EU로 간주한다.

1. 거주 외국인 규모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인 약 5억 1,347만 명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내 외국인(즉 다른 EU 회원국 국민)은 약 1,786만 명이고, 역외 외국인(즉 EU 비회원국의 제3국민)은 약 2,359만 명으로,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83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인 약 3억 3,096만 명 중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16) European Commission(2020), p. 17.

표 3-1. 2019년 EU(영국 포함) 역내 거주 내국인 및 외국인 규모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연령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	비율	수	비율
내국인	472,021	91.93	299,133	90.38
역내 외국인	17,859	3.48	13,722	4.15
역외 외국인	23,591	4.59	18,107	5.47
합계	513,472	-	330,962	-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2005년에는 약 2,104만 명이던 외국인 규모가 2019년에 약 4,14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또한 2005년 약 5.5%에서 2019년 약 8.1%로 높아졌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항상 작았지만, 연평균 약 81만 명씩 증가하여 역외 외국인(연평균 약 39만 명씩 증가)보다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 그 결과로 역외 외국인-역내 외국인 간 차이가 2005년에 약 1,076만 명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약 573만 명으로 감소하였다.[117]

2019년 현재,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표 3-2 참고). 유럽 내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약 1,008만 명으로 가장 크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외국인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약 12%로 월등하게 높다. 이 5개국 중 인구 규모는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순인데 반해 거주 외국인 규모는 독일 〉 영국 〉 이탈리아 〉 프랑스 〉 스페인 순이다. 즉 프랑스가 인구는 영국, 이탈리아보다 많지만, 거주 외국인은 영국, 이

117)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

표 3-2. EU(28개)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

(단위: 십억 유로, 천 명)

국가	GDP	인구	내국인	외국인		
				계	역내	제3국
(가) 전 연령						
독일	3,449	83,019	72,930 (88)	10,078 (12)	4,384 (5)	5,694 (7)
영국	2,525	66,647	60,447 (91)	6,172 (9)	3,682 (6)	2,490 (4)
이탈리아	1,788	60,360	55,104 (91)	5,255 (9)	1,583 (3)	3,672 (6)
프랑스	2,426	67,013	62,130 (93)	4,883 (7)	1,604 (2)	3,278 (5)
스페인	1,245	46,937	42,097 (90)	4,839 (10)	1,967 (4)	2,872 (6)
(나) 생산가능인구(15~64세)						
독일	3,449	53,845	45,971 (85)	7,868 (15)	3,476 (6)	4,392 (8)
영국	2,525	42,435	37,524 (88)	4,895 (12)	2,833 (7)	2,062 (5)
이탈리아	1,788	38,614	34,518 (89)	4,095 (11)	1,272 (3)	2,822 (7)
스페인	1,245	30,901	27,193 (88)	3,707 (12)	1,473 (5)	2,235 (7)
프랑스	2,426	41,495	38,165 (92)	3,330 (8)	1,034 (2)	2,296 (6)

주: 1) ( ) 안은 인구 대비 %.
2)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탈리아보다 작다. 비슷한 맥락에서, 프랑스는 GDP도 이탈리아보다 크지만 거주 외국인은 이탈리아보다 작다. 이 5개국 중 영국을 제외하면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더 많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속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독일이 약 787만 명으로 가장 많고, 독일 거주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약 15%로 가장 높다.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독일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프랑스 순이다. 그런데 이 5개국 중 프랑스의 순위는 전체 연령에서보다 더 뒤로 밀려서 가장 낮다. 특히 스페인은 프랑스보다 GDP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도 약 2,000만 명 적지만 거주 외국인 수는 더 많다. 또한 이 5개국 중 프랑스만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약 8%)이 10%에 못 미친다. 역내 외국인과 역외 외국인의 규모를 비교

하면, 전체 연령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국 중 영국만 역내 외국인이 더 많고 나머지 4개국은 역외 외국인이 더 많다.

[그림 3-1]에서 보듯이,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 중에서도 독일의 외국인 규모가, 앞서 살펴본 2019년뿐만 아니라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전체 기간인 1998년부터 항상 가장 컸다. 기술적인 이유로 독일의 공식적인 외국인 규모가 약 110만 명 감소한 2011년 이후로는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다.[118] 이처럼 독일의 외국인 규모 증가 속도가 빨랐던 원인 중에는, 아래에 설명하듯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독일이 시리아인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이유도 있다.

그림 3-1. EU 역내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의 외국인 거주 규모 추이(1998~2019년)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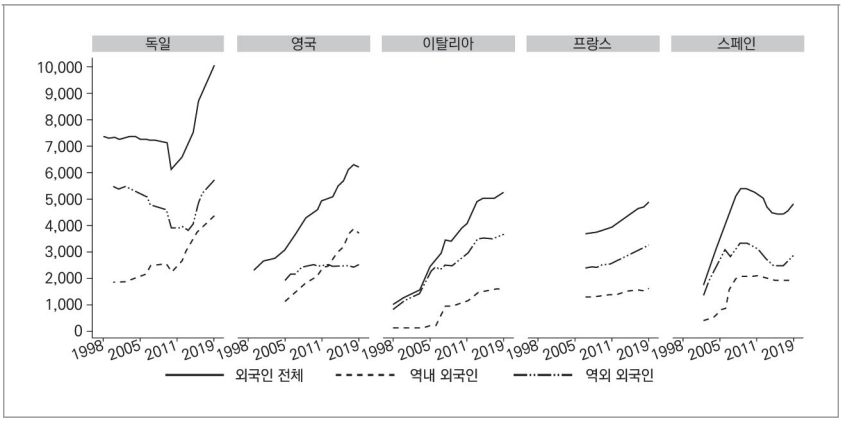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118) 2011년에 독일의 외국인 규모가 급감한 것은 해당 연도에 독일이 1987년 이래(따라서 독일 통일 이래) 처음으로 인구조사(census)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2011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적인 독일 거주 외국인 수가 약 110만 명 줄었고 내국인 수도 약 43만 명 줄었다. "Germany Counts Heads and Finds 1.5 Million Fewer Residents Than It Expected"(2013. 5.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0. 10. 14).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 1일에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하였다(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이 중 몰타와 키프로스를 제외한 8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EU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가 순차적으로 주어졌다. 특히 [그림 3-1]에 제시된 5개국 중에서는 영국이 상기한 8개국 국민에게 자국의 노동시장을 2004년 5월에 개방하였고, 이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2006년에 개방하였고, 독일은 2011년에 개방하였다.[119] 이에 따라 영국은 2005년부터 역내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역외 외국인 규모가 비교적 일정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역내 외국인이 역외 외국인보다 더 많아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내 외국인이 역외 외국인보다 많은 것은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역내 외국인 규모가 2011년을 시작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도 동일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년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역외 외국인은 감소하였지만 역내 외국인 규모가 급증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0]

흥미롭게도 프랑스는 상기한 8개국 국민에게 2008년에 자국 노동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역내 외국인 규모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독일과 영국은 상기한 8개국 국민에게 자국 노동시장을 개방한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즉 역내 외국인 규모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

---

119)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2011. 4. 28), "Free Movement: Workers from Eight Member States That Joined EU in 2004 Finally Enjoy Full Rights"(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0. 10. 14).

120) 이탈리아의 경우 역내 외국인 규모가 2006년 약 22만 명에서 2007년에 약 61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에 역외 외국인 규모는 2006년 약 245만 명에서 2007년에 약 233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역내 외국인 규모가 2006년 약 86만 명에서 2007년에 약 164만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역외 외국인 규모는 2006년 약 308만 명에서 2007년에 약 28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는 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던 것(즉 2006~08년 사이에 증가한 후 추가적인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상황이 해당 국가의 노동이민유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개방 효과의 지속성 또한 유입국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즉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규모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국은 루마니아,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이다(표 3-3 참고). 상위 5개국 중 루마니아가 약 353만 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EU 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약 9%이고,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약 18%에 이른다. 폴란드 또한 약 248만 명(EU 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약 6%, 폴란드 거주 인구의 약 7%), 이탈리아가 약 170만 명(EU 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약 5%, 이탈리아 거주 인구의 약 3%), 포르투갈이 약 120만 명(EU 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약 3%, 포르투갈 거주 인구의 약 12%)으로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상위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이는 이 중동부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의 EU 가입 이후, 상대적으로 임금이

표 3-3.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규모 상위 5개국: EU 회원국

(단위: 명, %)

출신국	EU 거주 외국인 수	EU 거주 외국인 전체 대비 비율	출신국 인구 대비 비율
루마니아	3,533,186	8.52	18.20
폴란드	2,475,906	5.97	6.52
이탈리아	1,702,602	4.11	2.82
포르투갈	1,195,934	2.89	11.64
독일	889,484	2.15	1.07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높은 서유럽 국가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대거 이주하였음을 시사한다.

EU 역내 외국인에서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루마니아인의 EU 회원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가능성, 즉 EU 가입 이후 고소득국가로 노동이민이 증가했다는 것이 더 잘 드러난다(표 3-4 참고). 루마니아가 EU에 가입(2007년 1월 1일)하기 2년 전인 2005년의 경우, EU(당시 25개국)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은 약 75만 명으로 EU 전체 외국인의 약 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9년에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 수는 약 353만 명으로 2005년보다 약 278만 명 증가(약 4.7배 증가)하였고, EU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9%로 2005년보다 6%p 넘게 높아

표 3-4. EU(28개국) 회원국 중 루마니아인 거주 규모 상위 5개국: 2005년 대 2019년

(단위: 명, %, %p)

연도	순위	국가	루마니아인 수	2005년 대비	거주 외국인 중 비율	2005년 대비
2019		EU 전체	3,533,186	2,780,645	8.55	6.21
2019	1	이탈리아	1,206,938	958,089	22.97	12.61
2019	2	스페인	670,187	356,769	13.85	4.71
2019	3	독일	659,470	586,105	6.54	5.53
2019	4	영국	421,974	404,355	6.81	6.23
2019	5	프랑스	129,766	-	2.66	-
2019	6	오스트리아	112,684	91,370	7.83	5.08
2019	13	헝가리	21,017	-46,591	11.63	-35.40
2005		EU 전체	752,541		2.34	
2005	1	스페인	313,418		9.14	
2005	2	이탈리아	248,849		10.36	
2005	3	독일	73,365		1.01	
2005	4	헝가리	67,608		47.02	
2005	5	오스트리아	21,314		2.75	
2005	6	영국	17,619		0.57	
2005	-	프랑스	-		-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졌다. 2005년과 비교할 때 거주 루마니아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이탈리아로, 2019년에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은 약 121만 명이다.

이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의 약 23%에 해당한다.[121] 독일, 영국, 스페인 거주 루마니아인 규모도 모두 50만 명 안팎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영국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 수는 약 24배나 증가하였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은 모두 유럽의 5대 경제대국에 속한다.[122] 반면에 루마니아의 북서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헝가리는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하기 전(2005년)에는 EU 회원국 중 거주 루마니아인 수 4위였고, 헝가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절반 가까이가 루마니아인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거주 루마니아인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거주 외국인 중 루마니아인의 비율도 약

그림 3-2. 유럽 지도

자료: 저자 작성.

121) 선행연구는 거주 루마니아인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가장 많은 이유로 언어(라틴계통) 및 문화적 유사성을 꼽는다. Davidescu *et al.*(2017).

122) 마찬가지로 유럽의 5대 경제대국에 속하는 프랑스의 경우 출신국별 인구수 원자료에 2005년 값이 없어서 2005년 대비 변화를 알 수 없다.

12%로 35%p 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관찰결과를 토대로 볼 때, 루마니아인의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헝가리 등이었으나(그림 3-2 참고),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뀌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또한 이민에서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제도적으로 이민이 수월해질 경우 경제적 요인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즉 EU 비회원국 국민)의 규모를 출신국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표 3-5 참고).

표 3-5.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출신국별 규모 상위 5개국: EU 비회원국

(단위: 명, %)

출신국	EU 거주 외국인 수	EU 거주 외국인 전체 대비 비율	출신국 인구 대비 비율
터키	1,655,145	3.99	1.98
모로코	1,335,184	3.22	3.66
시리아	1,073,206	2.59	6.29
중국	946,885	2.28	0.07
인도	808,811	1.95	0.06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 및 World Bank, "Population, Total"(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 중 터키인의 경우 [표 3-6]에서 보듯이 EU 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독일에 80%가 넘는 인원이 집중되고, 독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가 넘는다. 또한 2019년 현재 EU 회원국 중 거주 터키인 규모 상위 5개국 중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독일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다(그림 3-3 참고).

표 3-6.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터키인 규모 상위 5개국

(단위: 명, %)

순위	국가	거주 터키인 수	해당 국가 거주 외국인 중 비율	EU 거주 터키인 중 비율
1	독일	1,326,986	13.15	80.17
2	오스트리아	117,231	8.15	7.08
3	네덜란드	74,834	6.74	4.52
4	벨기에	37,547	2.66	2.27
5	덴마크	28,347	5.39	1.71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3. 유럽 지도(터키 포함)

자료: 저자 작성.

모로코인의 경우 [표 3-7]에서 보듯이 EU 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84%가 넘는 인원이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 있다(그림 3-4 참고). 특히 EU 역내 거주 모로코인 중 절반이 넘는 약 53%가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고, 스페인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모로코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4%가 넘는다.

표 3-7.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모로코인 규모 상위 5개국

(단위: 명, %)

순위	국가	거주 모로코인 수	해당 국가 거주 외국인 중 비율	EU 거주 모로코인 중 비율
1	스페인	713,777	14.75	53.46
2	이탈리아	422,980	8.05	31.68
3	벨기에	80,337	5.68	6.02
4	독일	67,243	0.67	5.04
5	네덜란드	36,495	3.29	2.73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유럽 및 북아프리카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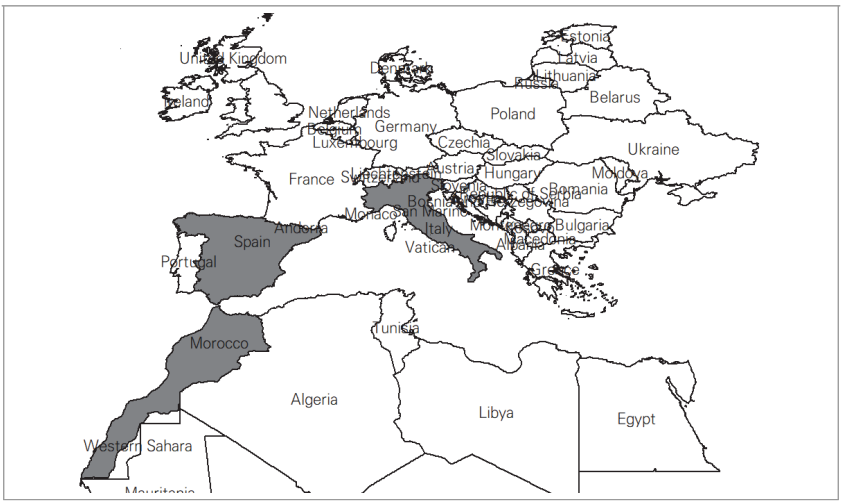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시리아인의 경우 시리아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EU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비율이 6%가 넘는다. 인구 2,000만 명 내외인 시리아가 EU 역내 거주 역외 외국인 규모의 3위에 이르게 된 것은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의 영향 때문이다. [그림 3-5]에서 보듯이 EU 역내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은 2010년까지는

4만 명 안팎에서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에 약 1만 명으로 감소한 후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4만 명이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약 12만 명이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약 40만 명이 증가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7~18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15만 명 안팎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결과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까지는 0.2% 안팎에서 꾸준하게 유지되었으나 2016년에는 1%를 넘어섰고 2019년에는 2.5%를 넘어섰다.

그림 3-5. EU 역내 거주 시리아인 규모 추이(1998~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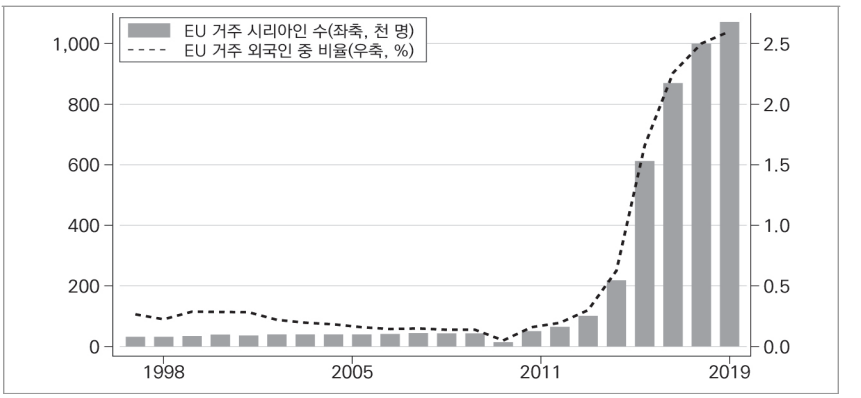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8]에서 보듯이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중 절반이 훌쩍 넘는 약 66%가 독일에 거주한다. 또한 시리아인은 독일 거주 외국인 중 약 7%를 차지한다. 스웨덴에도 EU 역내 거주 시리아인 중 약 13%가 거주하는데, 이들은 스웨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또한 2019년 현재 EU 회원국 중 거주 시리아인 규모 상위 5개국 중

독일과 스웨덴 외 나머지 3개국은 독일과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다(그림 3-3 참고).

표 3-8. EU(28개국)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시리아인 규모 상위 5개국

(단위: 명, %)

순위	국가	거주 시리아인 수	해당 국가 거주 외국인 중 비율	EU 거주 시리아인 중 비율
1	독일	708,245	7.02	65.99
2	스웨덴	137,115	14.71	12.78
3	네덜란드	74,084	6.67	6.90
4	오스트리아	49,813	3.46	4.64
5	덴마크	34,731	6.60	3.24

주: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할 의사가 있는 경우만 포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8. 1)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2019년 현재 EU 및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표 3-9 참고). 그런데 외국인 중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80.07%이고(내국인 74.12%) 취업률도 74.53%(내국인 69.68%)로 내국인보다도 더 높다. 동시에 실업률은 5.54%로 내국인(4.44%)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에 역외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67.49%이고 취업률도 57.98%로 내국인보다 낮고, 실업률은 9.51%로 내국인보다 높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것은 역외 외국

인의 경우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한 차이의 바탕에는,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EU 회원국 국민은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역외 외국인이 EU 회원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EU 비회원국 비교할 때 EU 회원국 간에는 문화 및 언어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표 3-9. 2019년 EU(28개국) 거주 외국인 취업상황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전체	74.00	69.25	4.75
내국인	74.12	69.68	4.44
외국인	72.81	64.98	7.83
- 역내 외국인	80.07	74.53	5.54
- 역외 외국인	67.49	57.98	9.51

주: 2019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1000)[LFSA_PGAN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 절에서 살펴본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별로 외국인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표 3-10]에서 보듯이 역내 외국인은 5개국 모두에서 내국인보다도 높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내국인보다 5%p 넘게 높다. 반면에 독일은 역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1%p 수준에 불과하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3%p대에 불과하다. 이로 미루어, 독일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내국인과 유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유인이 내국인과는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내국

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낮다.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내국인보다 10%p가 넘게 낮다. 반면에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높다. 이로 미루어, 독일, 영국, 프랑스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은 경제활동의 유인이 내국인과 다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은 경제활동의 유인이 내국인과 유사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취업률도 경제활동참가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5개국 모두에서 역내 외국인은 내국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차이가 가장 작은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이다. 반면에 역외 외국인의 경우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내국인보다 취업률이 훨씬 낮다. 특히 독일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의

표 3-10. EU(28개) 회원국 중 2019년 거주 외국인 규모 상위 5개국별 외국인 취업상황

(단위: %, %p)

(가) 경제활동참가율					
국가	내국인(A)	역내 외국인(B)	B-A	역외 외국인(C)	C-A
독일	80.56	81.75	1.20	63.68	-16.88
영국	78.12	84.81	6.69	69.40	-8.72
이탈리아	65.11	73.10	7.98	69.83	4.71
프랑스	72.20	75.70	3.51	60.76	-11.44
스페인	73.46	79.72	6.26	73.88	0.42
(나) 취업률					
국가	내국인(A)	역내 외국인(B)	B-A	역외 외국인(C)	C-A
독일	78.43	78.24	-0.19	57.59	-20.83
영국	75.20	82.09	6.89	64.73	-10.47
이탈리아	58.81	62.83	4.02	60.14	1.33
프랑스	66.39	68.99	2.60	49.62	-16.77
스페인	63.69	67.50	3.81	56.92	-6.77

주: 2019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자료: Eurostat,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1000)[LFSA_PGANW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0. 14)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취업률은 역내 외국인보다 20%p 넘게 낮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10%p 넘게 낮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역외 외국인 간 취업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오히려 역외 외국인이 더 높다.

3. 소결

이상으로 본 장에서 살펴본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인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의 규모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 중 최대 집단은 루마니아인으로, 약 353만 명(EU 역내 거주 외국인 전체의 약 9%,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약 18%)이다. 폴란드인, 이탈리

아인, 포르투갈인 집단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이는 이 중동부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자국의 EU 가입 이후,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서유럽 국가에서 일을 할 목적으로 대거 이주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루마니아인의 경우,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헝가리 등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적으로 이민이 수월해질 경우 경제적 요인이 이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EU 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독일에 거주하는 비율이 80%가 넘고, 독일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가 넘는다. 모로코인의 경우 EU 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84% 넘는 인원이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 있다. 특히 EU 역내 거주 모로코인 중 약 53%가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고, 스페인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중 모로코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4%가 넘는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EU 역내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중 약 66%가 독일에 거주하는데, 이는 독일 거주 외국인 중 약 7%에 달하는 규모이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본 보고서의 앞선 장들에서 설명하였듯이 역내 외국인의 경우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취업 시 내국인과 차이가 없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본 장은 이민유입이 EU 및 EFTA 4개국(편의상 이하에서는 EU로 지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123] 이때 EU는 영국을 포함한 28개국을 가리킨다. 본 보고서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EU의 역내 노동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는 한계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본 장은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 실업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또한 노동이민과 관련하여 사회 전반의 주요 관심사는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우려하듯이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대체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한다. 한편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알아보기 위해, 이민유입이 해당 국가 노동시장의 종사상 지위(임금노동자 또는 자영업자) 구성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한다.

본 장은 우선 제1절에서 실증분석의 관측단위(unit of observation)인 노동시장을 정의한다. 관측단위의 정의에 별도의 장을 할애하는 것은, 본 보고서 제1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는 본 실증분석의 특성상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특징의 고유한 효과, 즉 고정효과(fixed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세분화된 관측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본 장의 제2절은 실증분석 모형을 수립한다. 이민자는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지역별 경제상황을

123) 본 보고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8개 EU 회원국과 4개 EFTA 회원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스위스) 간에는 노동이동이 자유롭다. 이에 본 장의 취지에 맞게 EFTA 회원국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할 경우, 이러한 선택편이(selection bias)에 따른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실증분석은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OLS뿐만 아니라 도구변수(IV: Instrumental Variables) 추정도 사용한다. 본 장의 제3절은 본 실증분석에서 사용한 자료를 설명하고, 제4~6절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때 OLS뿐만 아니라 IV 추정 결과도 보여 주고,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를 달리한 결과도 보여 준다. 제7절은 본 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1. 관측단위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관측단위는 노동시장이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문헌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의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연구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정의를 이용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이 지리적 기준(예: 국가)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이나 숙련도에 따라서도 분절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i로 표기)×교육수준(e로 표기) 또는 직종(o로 표기)×연령(a로 표기)'의 조합을 노동시장으로 정의한다.[124] 이처럼 노동시장을 지리적 기준과 다른 기준의 조합으로 정의할 경우,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지역의 고유한 효과, 즉 지역고정효과(region- fixed effect)를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125]

124) 연령보다는 경력이 숙련도에 대한 더 좋은 측도일 것이지만, 본 실증분석은 자료의 제약으로 경력 대신 연령을 사용한다. 연령과 경력 간 상관관계가 높을 것이므로 연령 또한 숙련도에 대한 좋은 측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문헌에 따르면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즉 앞서 언급한 *i*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실증분석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에 대한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한다. 특히 가장 세분화된 단위인 NUTS 2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이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 및 NUTS 1단위를 사용한다. 이때 NUTS(Nomenclature des Unités Territoriales Statistiques)란 국가보다 좁은 단위의 지역 분류로, EU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법이다.[126]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제정한 국제교육표준분류 1997 개정(ISCED 1997: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97)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한다. 교육수준의 최저 단계인 1단계는 ISCED 1997의 분류기호 0과 1을 통합한 것이다. 직종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제정한 국제표준직업분류 2008 개정(ISCO-0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2008)의 대분류(Major Group) 중 군인(대분류 0)을 제외한 나머지 9개로 분류한다(표 4-1 참고).

끝으로, 연령은 본 분석이 사용하는 자료가 허용하는 가장 세분화된 분류를 따라 4개 집단(15~29세, 30~49세, 50~64세, 65~84세)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노동시장임을 감안하여 15세 미만과 85세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25) Card(2001); Borjas(2003).
126) Eurostat(2011), p. 5.

표 4-1. 실증분석의 직종 분류

직종	ISCO 대분류
관리자(Managers)	1
전문가(Professionals)	2
기술공 및 준전문가(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3
사무 종사자(Clerical Support Workers)	4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Services and Sales Workers)	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7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8
단순노무 종사자(Elementary Occupations)	9

자료: ILO(2012); 통계분류포털,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연계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실증분석 모형

가. 이민유입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해 가장 널리 이용되는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따라서 본 실증분석은 우선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식 4-1]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OLS)

$$Y_{iea} = \beta P_{iea} + \alpha_{ea} + \alpha_i + u_{iea}$$

앞서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아래첨자 i는 지역을, e는 교육수준을, a는 연

령을 각각 가리킨다. 피설명변수 Y는 해당 조합($i \times e \times a$)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가리킨다. 주설명변수 P는 해당 조합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다. α는 해당 조합(i 및 $e \times a$)의 고정효과를 통제한다. 즉 '교육수준×연령' 조합($e \times a$) 및 지역(i)의 고유한 효과를 통제한다. u는 해당 조합($i \times e \times a$)의 오차항이다.

본 장의 도입부와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상기한 회귀식은 선택편이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가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데는 해당 지역의 현재 경제상황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현재의 좋은 경제상황은 해당 지역의 이민유입을 증가시킬 것이고(즉 식 4-1에서 $P\uparrow$), 이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기준모형에서 피설명변수로 고용률을 사용하는 경우 OLS 추정치에 상향편이(upward bias)를 일으킬 것이고, 피설명변수로 실업률을 사용하는 경우 OLS 추정치에 하향편이(downward bias)를 일으킬 것이다.[127]

상기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실증분석은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따라 과거 이민유입 규모를 현재 이민유입 규모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신규 이민자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미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어 이민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이민자 유입과 관련된 정보는 해당 지역의 현재 경제상황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이민유입 규모는 본 실증분석의 틀에서 도구변수의 2가지 (필요충분)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실증분석은 내생성이 의심되는 주설명변수인 '지역(i)×교

127) 이러한 내생성의 원인이 되는 선택편이가 시간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노동시장 고유의 특성에 주로 기인할 경우,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면 내생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해 다소 한계가 있다.

육수준(e)×연령(a)' 조합별 2011년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P_{iea}에 대한 도구변수로 '지역(i)×연령(a)' 조합별 2001년 인구 대비 유입 외국인 비율 $P_{ia}^{F}(01)$과 유입 내국인 비율 $P_{ia}^{D}(01)$을 사용한다. 이러한 도구변수를 사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 Two-Stage Least Square)의 1단계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식 4-2]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2SLS): 1단계

$$P_{iea} = \delta P_{ia}(01) + \alpha_{ea} + \alpha_i + v_{iea}$$

1단계 회귀식에서 설명변수 $P_{ia}(01)$은 $P_{ia}(01) := (P_{ia}^{F}(01),\ P_{ia}^{D}(01))$로 정의되는 벡터이고, 고정효과 α는 기준모형에서와 같으며, v는 해당 조합(i×e×a)의 오차항이다. 이러한 1단계 회귀식 추정을 통해 P_{iea}의 적합치(fitted value) $\widehat{P_{iea}}$를 구한다. 기본모형에서 내생성이 의심되는 주설명변수 P_{iea}를 상기한 적합치로 대체한 것이 2단계 회귀식이다.

[식 4-3]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2SLS): 2단계

$$Y_{iea} = \beta \widehat{P_{iea}} + \alpha_{ea} + \alpha_i + u_{iea}$$

다음에서 설명하는 다른 실증분석 모형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한다.

나.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고용률과 실업률이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지만, 노동이민유입과 관련하여 대중적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외국인 취업자 증가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회귀식을 사용한다. 이때 관측단위는 자료의 특성상 앞서와 달리 '지역(i)×직종(o)×연령(a)'을 이용한다.

[식 4-4]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

$$\log N_{ioa} = \beta \log F_{ioa} + \alpha_{oa} + \alpha_i + u_{ioa}$$

이 회귀식에서 피설명변수인 N과 주설명변수인 F는 각각 해당 조합($i \times o \times a$)의 내국인 취업자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앞서 정의한 것과 같다. 이처럼 규모를 변수로 사용할 경우 '규모효과(scale effects)'에 따라 추정치에 상향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내국인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모두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고정효과(α_i)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28] 이러한 규모효과 외에도, 이 회귀식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선택편이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내포

128) 선행연구 중 Borjas(2006)는 이러한 규모 효과를 고려하여 외국인 취업자 수 대신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취업자 비율, 즉 $F/(N+F)$를 주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실증분석에서는 $F/(N+F)$를 주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내국인 취업자 수(N)가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에 동시에 들어가므로 하향편이(downward bias)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외국인 취업자 수를 주설명변수로 사용한다.

한다. 따라서 본 분석은 OLS뿐만 아니라, 앞서 기준모형에서와 같은 도구변수를 사용한 2SLS로도 [식 4-4]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다.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끝으로 본 실증분석은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해당 노동시장의 종사상 지위(status in employment)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외국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에 치우쳐 있을 경우, 이민유입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자영업 종사자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고, 노동수요를 늘릴 것이다. 이 2가지 효과는 모두 임금노동자 대비 자영업 종사자의 상대소득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할 때 종사상 지위 구성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실증분석은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관측단위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역(i)×직종(o)×연령(a)'이다.

[식 4-5]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모형

$$Z_{ioa} = \beta Q_{ioa} + \alpha_{oa} + \alpha_i + u_{ioa}$$

이때 피설명변수인 Z는 해당 조합($i \times o \times a$)의 종사상 구성으로,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과 자영업자 비율을 각각 사용한다. Q는 해당 조합의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OLS뿐만 아니라 앞서 정의한 도구변수들을 사용한 2SLS로도 [식 4-5]를 추정한다.

3. 자료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실증분석은 EU의 '2011 인구주택총조사(The 2011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자료를 사용한다.[129] 기존에 EU가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비해 2011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더 많은 변수들을 국가 및 지역 간 비교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도구변수들은 EU의 2001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표본뿐만 아니라 여성 표본과 남성 표본을 각각 사용한다. [표 4-2]는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관측단위가 '지역(i)×교육수준(e)×연령(a)'인 경우에 대해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표 4-3]은 관측단위가 '지역(i)×직종(o)×연령(a)'인 경우의 요약통계량을 보여 준다. 지역(i)에 대한 정의가

표 4-2. 요약통계량: 관측단위=지역(i)×교육수준(e)×연령(a)의 조합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 지역: 국가(NUTS 0단위)						
피설명변수	고용률	727	0.507	0.309	0.001	0.985
	실업률	720	0.101	0.123	0.000	0.796
주설명변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705	0.165	0.166	0.000	0.994
(나) 지역: NUTS 1단위						
피설명변수	고용률	2,265	0.513	0.308	0.000	1.000
	실업률	2,243	0.101	0.117	0.000	0.796
주설명변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2,215	0.143	0.143	0.000	0.994
(다) 지역: NUTS 2단위						
피설명변수	고용률	6,414	0.517	0.307	0.000	1.000
	실업률	6,319	0.098	0.118	0.000	0.849
주설명변수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6,336	0.139	0.149	0.000	1.000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9)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

표 4-3. 요약통계량: 관측단위=지역(i)×직종(o)×연령(a)의 조합

변수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가) 지역: 국가(NUTS 0단위)						
피설명변수	log(내국인 취업자 수)	861	8.264	4.386	0.000	14.786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1,074	0.787	0.229	0.002	1.000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1,064	0.180	0.207	0.000	0.987
주설명변수	log(외국인 취업자 수)	858	6.291	3.549	0.000	13.272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714	0.149	0.153	0.000	0.787
(나) 지역: NUTS 1단위						
피설명변수	log(내국인 취업자 수)	2,355	8.176	4.031	0.000	13.270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3,483	0.779	0.228	0.002	1.000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3,434	0.196	0.208	0.000	0.987
주설명변수	log(외국인 취업자 수)	2,281	5.853	3.289	0.000	12.318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1,903	0.112	0.126	0.000	0.787
(다) NUTS 2단위						
피설명변수	log(내국인 취업자 수)	6,520	7.395	3.655	0.000	13.270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 비율	9,778	0.771	0.233	0.000	1.000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	9,495	0.203	0.215	0.000	1.000
주설명변수	log(외국인 취업자 수)	6,129	5.012	3.005	0.000	11.932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5,045	0.104	0.116	0.000	0.787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달라지더라도 요약통계량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최솟값, 최댓값, 표준편차 등의 크기로 볼 때 표본 내 변동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절은 이민유입(즉 외국인 비율 증가)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식 4-1]을 OLS로 추정한 결과를 설명하고, [식 4-2]와 [식 4-3]을 이용한 2SLS 추정 결과를 설명한다. 앞서 언급하

였듯이, 간결한 설명을 위해 지역을 NUTS 2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를 우선 제시하고,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는 지역을 NUTS 2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의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설명한다.

가. OLS 추정 결과

[표 4-4]와 [표 4-5]는 지역을 NUTS 2단위로 정의하여 [식 4-1]을 OLS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식 4-1]은 각 지역을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라 24개로 세분하고, 지역고정효과와 교육수준×연령 조합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집단 내 추정(within-group estimation)'이다.

[표 4-4]와 [표 4-5]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추정 결과가 지역고정효과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 외국인 비율 증가는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면 이러한 효과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이 작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연령 조합의 고정효

표 4-4.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	(2)	(3)	(4)	(5)	(6)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113***	−0.025**	0.073***	−0.084***	0.137***	0.024*
	(0.010)	(0.013)	(0.012)	(0.015)	(0.011)	(0.014)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X	O	X	O	X	O
관측치 수	6,319	6,319	6,242	6,242	6,271	6,271
R^2	0.890	0.923	0.872	0.917	0.880	0.909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5.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	(2)	(3)	(4)	(5)	(6)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110***	-0.031***	-0.086***	0.014	-0.114***	-0.039***
	(0.009)	(0.010)	(0.012)	(0.013)	(0.009)	(0.009)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X	O	X	O	X	O
관측치 수	6,251	6,251	6,138	6,138	6,181	6,181
R^2	0.479	0.732	0.426	0.708	0.479	0.705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과는 통제하고 지역고정효과는 통제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비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그러나 지역고정효과까지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가 상당히 약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치의 부호도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추정치에 편이(고용률은 상향편이, 실업률은 하향편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한 경우가 더 신빙성이 있다. 다음에서는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한 추정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 외국인 비율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전체 표본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할 때 고용률은 0.025% 감소하는 데 그치고(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실업률은 0.031% 감소하는 데 그친다(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비록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는 추정치의 부호가 반대이기는 하지만, 절댓값은 마찬가지로 미미하다.

나. 2SLS 추정 결과

[표 4-6]은 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식 4-2]와 [식 4-3]을 이용하여 2SLS로 추정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OLS 추정 결과와 차이가 난다. 우선 앞서 살펴본 것과 달리 외국인 비율 증가는 전체적으로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은 감소시킨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외국인 비율로 야기된 현재의) 외국인 비율 증가는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전체 표본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고용률은 1.308% 증가하고(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실업률은 0.906% 감소한다(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이러한 결과들은 추정치의 크기와 부호에서 앞서 살펴본 OLS 추정 결과와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OLS 추정치는 0에 가까웠지만, 도구변수 추정치들은 절댓값이 훨씬 크다. OLS와 2SLS 추정치 간 이러한 차이는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때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변수와 외국인 비율 간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OLS 추정 결과

표 4-6.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도구변수 추정: 지역=NUTS 2단위

	고용률			실업률		
	(1)	(2)	(3)	(1)	(2)	(3)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중	1.308*** (0.363)	0.883** (0.344)	0.914*** (0.257)	-0.906*** (0.268)	-0.974*** (0.329)	-0.595*** (0.181)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2,989	2,811	2,874	2,966	2,777	2,840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와 달리, 외국인 비율이 미치는 영향은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 유사하고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남성의 고용률은 0.914% 증가하고 여성의 고용률도 0.883% 증가한다. 또한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하면 남성의 실업률은 0.595% 감소하고 여성의 실업률도 0.974%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추정치의 크기와 부호에서 앞서 살펴본 OLS 추정 결과와는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구변수 추정 결과는 EU의 경우 흔히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이민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장의 제5절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다. 강건성 검증

앞서 살펴본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표 4-7], [표 4-8], [표 4-9], [표 4-10]에서 보듯이, OLS의 경우 앞서 살펴본 NUTS 2단위의 결과가 국가 및 NUTS 1단위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효과의 크기는 국가의 경우보다 NUTS 1단위 및 2단위의 경우가 더 크다. 도구변수 추정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정의가 다르더라도 유사성이 관찰된다(표 4-11 및 4-12 참고). 또한 지역의 정의가 달라지더라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OLS와 도구변수의 추정 결과가 상이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지역×교육수준×연령의 조합을 관측단위로 할 경우, 외국인 비율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 모형 및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방법론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한 도구변수로 추정한 경우, 외국인 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

은 감소한다. 이러한 효과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는 NUTS 1단위 또는 2단위로 정의할 때, 즉 지역의 정의를 더욱 세분화할 때 더욱 커진다.130)

표 4-7.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국가

	(1)	(2)	(3)	(4)	(5)	(6)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141***	0.017	0.088***	−0.043	0.172***	0.057
	(0.028)	(0.037)	(0.029)	(0.042)	(0.030)	(0.041)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X	O	X	O	X	O
관측치 수	701	701	693	693	695	695
R^2	0.898	0.920	0.890	0.916	0.883	0.905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8.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국가

	(1)	(2)	(3)	(4)	(5)	(6)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151***	−0.061**	−0.125***	−0.032	−0.162***	−0.068**
	(0.023)	(0.028)	(0.024)	(0.03)	(0.023)	(0.027)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X	O	X	O	X	O
관측치 수	695	695	682	682	682	682
R^2	0.553	0.722	0.558	0.719	0.549	0.719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0) 본 보고서의 제1장에서 살펴본, 미국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표 4-9. 이민유입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NUTS 1단위

	(1)	(2)	(3)	(4)	(5)	(6)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111***	0.010	0.075***	−0.050*	0.123***	0.045*
	(0.016)	(0.022)	(0.018)	(0.026)	(0.018)	(0.023)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X	O	X	O	X	O
관측치 수	2,211	2,211	2,186	2,186	2,199	2,199
R^2	0.898	0.926	0.887	0.924	0.887	0.912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0. 이민유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OLS): 지역=NUTS 1단위

	(1)	(2)	(3)	(4)	(5)	(6)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103***	−0.037**	−0.092***	−0.011	−0.102***	−0.036**
	(0.014)	(0.015)	(0.016)	(0.017)	(0.014)	(0.015)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X	O	X	O	X	O
관측치 수	2,194	2,194	2,165	2,165	2,171	2,171
R^2	0.509	0.760	0.493	0.758	0.521	0.745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1.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2SLS): 지역=국가

	(1)	(2)	(3)	(4)	(5)	(6)
	고용률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0.483*	0.988*	0.237	−0.449**	−0.943**	−0.339**
	(0.248)	(0.505)	(0.204)	(0.200)	(0.452)	(0.158)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347	317	318	344	313	309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2. 이민유입이 고용률 및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2SLS): 지역=NUTS 1단위

	(1)	(2)	(3)	(4)	(5)	(6)
	고용률			실업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1.012***	2.265**	0.744**	-0.635***	-1.669**	-0.614***
	(0.341)	(1.059)	(0.294)	(0.211)	(0.782)	(0.233)
교육수준×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988	910	928	984	906	918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노동이민과 관련하여 널리 퍼져 있는 우려와 같이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 취업자를 대체하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식 4-4]의 모형으로 추정한다. 이때 관측단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역×직종×연령의 조합이다. 앞 절에서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본 절과 다음 절의 분석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한 직관을 제공한다는 의의도 있다.

간결한 설명을 위해, 우선 지역을 NUTS 2단위로 정의한 경우에 대하여 OLS와 2SLS 추정 결과를 동시에 설명한다.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경우의 추정 결과는 NUTS 2단위 추정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한다.

가. OLS 및 2SLS 추정 결과

[표 4-13]은 [식 4-4]의 OLS 및 2SLS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취업자 규모 증가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 간에도 유사하며, OLS와 2SLS 간에도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OLS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1% 증가하면 내국인 취업자는 0.679% 증가한다(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추정치들은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 취업자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에 대한 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취업자 수를 피설명변수와 주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규모효과로 인해 OLS 추정치에 상향편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분석은 지역고정효과와 직종×연령 조합의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피설명변수와 주설명변수를 로그값으로 사용한 것도 규모효과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수 있다. 도구변수 추정 결과와 OLS 추정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 또한 그러한 규모효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표 4-13.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피설명변수=log(내국인 취업자 수)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log(외국인 취업자 수)	0.679***	0.782***	0.657***	0.618***	0.964***	0.688***
	(0.013)	(0.012)	(0.013)	(0.215)	(0.321)	(0.106)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6,075	5,910	5,970	2,850	2,551	2,710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강건성 검증

앞서 살펴본 NUTS 2단위의 추정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표 4-14]와 [표 4-15]는 각각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국가 단위(표 4-14 참고)에서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다. NUTS 1단위(표 4-15 참고)의 경우 전체 표본의 추정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지만,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에서는 도구변수 추정 결과에서 외국인 취업자 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비록 일부 추정 결과가 나머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전체 표본에서는 외국인 취업자 수 증가가 내국인 취업자 수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를 바꾸더라도 계속해서 관찰되었다.

표 4-14.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피설명변수=log(내국인 취업자 수)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log(외국인 취업자 수)	0.681***	0.748***	0.674***	0.545***	0.563***	0.404***
	(0.029)	(0.029)	(0.030)	(0.169)	(0.182)	(0.147)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855	828	838	416	359	362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5. 외국인 취업자 수가 내국인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피설명변수=log(내국인 취업자 수)					
	(1)	(2)	(3)	(4)	(5)	(6)
	OLS			IV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log(외국인 취업자 수)	0.638***	0.763***	0.632***	0.604**	0.225	-0.500
	(0.019)	(0.02)	(0.02)	(0.248)	(0.35)	(2.816)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2,271	2,196	2,216	1,026	881	929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본 절은 전체 취업자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때 전체 취업자 중 임금노동자의 비율과 자영업자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식 4-5]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이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추가적인 노동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관측단위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지역×직종×연령의 조합이다. 앞 절에 이어, 본 절의 분석은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킨다는 제4절의 추정 결과의 원인에 대한 직관을 준다는 의의도 있다.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간결한 설명을 위해 우선 지역을 NUTS 2단위로 정의한 경우에 대하여 OLS와 2SLS 추정 결과를 동시에 설명한다.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경우의 추정 결과는 NUTS 2단위 추정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한다.

가. OLS 및 2SLS 추정 결과

[표 4-16]과 [표 4-17]은 [식 4-5]의 OLS 및 2SLS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 취업자 비율 증가는 임금노동자 비율은 증가시키지만 자영업자 비율은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남성 표본과 여성 표본 간에도 결과가 유사하며, OLS와 2SLS 간에도 결과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OLS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이 1% 증가할 때 임금노동자 비율이 0.197% 증가하는 반면(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영업자 비율은 0.234%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다르다는 것, 즉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노동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재차 설명하였듯이 OLS에는 선택편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물리적 자본, 네트워크 등이 필요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기가 더 수월한 지역을 고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본 분석은 이를 감안하여 지역고정효과와 직종×연령 조합의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또한 도구변수 추정 결과도 OLS 추정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표 4-16.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0.197***	0.143***	0.163***	1.428***	1.194***	1.153***
	(0.027)	(0.028)	(0.047)	(0.434)	(0.374)	(0.379)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5,025	4,832	4,912	2,737	2,548	2,642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7.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2단위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0.234***	-0.157***	-0.244***	-1.029***	-0.987***	-0.935***
	(0.025)	(0.027)	(0.028)	(0.362)	(0.290)	(0.322)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4,914	4,682	4,773	2,675	2,472	2,566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강건성 검증

앞서 살펴본 NUTS 2단위의 추정 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차원에서, [표 4-18]과 [표 4-19]는 피설명변수를 임금노동자 비율로 하고, 각각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표 4-20]과 [표 4-21]은 피설명변수를 자영업자 비율로 하고, 각각 지역을 국가 및 NUTS 1단위로 정의한 추정 결과를 보여 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서 NUTS 2단위의 추정 결과(표 4-16, 표 4-17 참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은 감소한다.

표 4-18.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0.244***	0.147***	0.280***	0.871***	1.000***	0.799***
	(0.057)	(0.054)	(0.059)	(0.218)	(0.295)	(0.196)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710	683	695	342	326	327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9.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국가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0.276***	−0.148***	−0.340***	−0.684***	−0.509***	−0.725***
	(0.054)	(0.05)	(0.058)	(0.181)	(0.183)	(0.195)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699	657	675	342	321	321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20.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임금노동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1)	(2)	(3)	(4)	(5)	(6)
		OLS			2SLS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0.206***	0.105***	0.254***	0.712***	0.898***	1.122***
	(0.039)	(0.037)	(0.041)	(0.266)	(0.306)	(0.35)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1,899	1,798	1,846	964	879	912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21.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증가가 자영업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 지역=NUTS 1단위

	(1)	(2)	(3)	(4)	(5)	(6)
		OLS			IV	
		(가)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	−0.233***	−0.113***	−0.289***	−0.530**	−0.574**	−1.025***
	(0.035)	(0.034)	(0.038)	(0.236)	(0.245)	(0.360)
직종×나이고정효과	O	O	O	O	O	O
지역고정효과	O	O	O	O	O	O
관측치 수	1,879	1,757	1,814	964	874	906

주: ( ) 안은 강건 표준오차. *는 5%, **는 1%, ***는 0.1%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0. 11. 1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7. 소결

본 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보았다. 우선 EU 및 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 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83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인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 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고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

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는 가족 초청 범위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유학생 및 연구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며, 국제장학 프로그램을 늘리고, 우수 유학생에게 한국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일-학습 연계 비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 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 기초 공정산업) 분야에 외국인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쿼터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131]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

131) 법무부(2018), pp. 29~32.

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은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를 불식할 만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유덕, 임유진. 2016.『한국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10년의 평가와 무역 ·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민국정부 편. 2015.「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20.『사증발급 안내메뉴얼(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법무부. 2018.「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이철희, 김혜진. 2020.「외국인력의 산업별 고용구조분석: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함의」.『노동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이철희, 정선영. 2015.「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15-13호. 한국은행.

정재욱, 정민지. 2019.『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세계지역전략연구 19-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Altonji, J. G. and D. Card. 1991. "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Less-skilled Natives." J. M. Abowd and R. B. Freeman eds. *Immigration, Trade and the Labor Marke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elli, Massimo, Gaetano Basso, Giuseppe Ippedico, and Giovanni Peri. 2019. "Youth Drain,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NBER Working Paper, No. 26055.

Anelli, Massimo and Giovanni Peri. 2017. "Does Emigration Delay Political Change? Evidence from Italy during the Great Recession." *Economic Policy*, Vol. 32.

Arnorsson, Agust and Gylfi Zoega. 2018. "On the Causes of Brexi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5.

Arpaia, Alfonso, Aron Kiss, Balazs Palvolgyi, and Alessandro Turrini. 2016. "Labour Mobility and Labour Market Adjustment in the EU." *IZA Journal of Migraion,* Vol. 5.

Bartel, A. P. 1989. "Where Do the New United-States Immigrants Liv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7, No. 4.

Basso, Gaetano, Francesco D'Amuri, and Giovanni Peri. 2019. "Immigrants, Labor Market Dynamics and Adjustment to Shocks in the Euro Area." *IMF Economic Review*, Vol. 67.

Becker, Sascha, Thiemo Fetzer, and Dennis Novy. 2017. "Who Voted for Brexit? A Comprehensive District-Level Analysis." *Economic Policy*, Vol. 32, Issue 92.

Beyer, Robert and Frank Smets. 2015. "Labour Market Adjustments and Migr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ow Different?" *Economic Policy*, Vol. 32.

Blanchard, Olivier and Lawrence Katz. 1992. "Regional Evolution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Borjas, George. 1999. "The Economic Analysis of Immigration." O. C. Ashenfelter and 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A.

_____.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4.

_____. 2006. "Native Internal Migration and the Labor Market Impact of

Immigr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41, No. 2.

Borjas, G. J., R. B. Freeman, and L. F. Katz. 1997. "How Much Do Immigration and Trade Affect Labor Market Outcom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97, No. 1.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0.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Germany."

Card, D. 2001. "Immigrant Inflows, Native Outflows and the Local Labor Market Impacts of Immigr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9, No. 1.

Card, D. and E. Lewis. 2005. "The Diffusion of Mexican Immigrants during the 1990s: Explanations and Impacts." NBER Working Paper, No. 11552.

Card, D. and J. DiNardo. 2000. "Do Immigrant Inflows Lead to Native Outflow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2.

Card, D. and T. Lemieux. 2001.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Based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Issue 2.

Davidescu, Adriana Ana Maria, Vasile Alecsandru Strat, Raluca Mariana Grosu, and Ion-Daniel Zgura. 2017. "Determinants of Romanians' Migra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Static and Dynamic Panel Gravity Approaches." *Amfiteatru Economic*, Vol. 19, No. 46.

Dustmann, C., F. Fabbri, I. Preston, and J. Wadsworth. 2003. "The Local Labour Market Effects of Immigration in the UK." Home Office Report.

Elsner, Benjamin. 2013a. "Does Emigration Benefit the Stayers? Evidence from EU Enlargemen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6.

_____. 2013b. "Emigration and Wages: The EU Enlargement Experi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1, No. 1.

EU, ICMPD, and FIIAPP. 2015. "Rabat Process: A Decade of Dialogue."

European Commission. 2020. "2019 Annual Report on Intra-EU Labour Mobility."

Eurostat. 2011. "Regions in the European Union.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NUTS 2010/EU-27."

Filer, R. K. 1992. "The Effect of Immigrant Arrivals on Migratory Patterns of Native Workers." G. J. Borjas and R. B. Freeman eds. *Immigration and the Work Force: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rce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ey, W. H. 1995. "Immigration and Internal Migration Flight: A California Case Study." *Population and Environment*, Vol. 16, No. 4.

_____. 1996. "Immigration, Domestic Migration, and Demographic Balkanization in America: New Evidence for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2, No. 4.

Gerdes, Christer and Eskil Wadensjö. 2010.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Election Outcomes in Danish Municipalities." SULCIS Working Papers, 2010:3.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 2019. *Annual Report 2019/20: Dealing with Structural Change*.

Halla, Martin, Alexander Wagner, and Josef Zweimüller. 2012. "Does Immigration into Their Neighborhoods Incline Voters Toward the Extreme Right? The Case of the Freedom Party of Austria." IZA Discussion Papers, No. 6575.

Hunt, J. 1992. "The Impact of the 1962 Repatriates from Algeria on the French Labormarket."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Vol. 45, No. 3.

ILO. 2012.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ISCO-08.*

Jauer, Julia, Thomas Liebig, John P. Martin, and Patrick A. Puhani. 2019.

"Migration as an Adjustment Mechanism in the Crisis? A Comparison of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2006-2016."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32.

Mayr, Karin and Giovanni Peri. 2009. "Brain Drain and Brain Return: Theory and Application to Eastern-Western Europe."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Vol. 9, No. 1.

OECD. 201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9.*

Otto, Alkis and Max Steinhardt. 2014. "Immigration and Election Outcomes: Evidence from City Districts in Hamburg."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45.

Pina-Delgado, José. 2013. "The Current Scheme to Manage Migration between Europe and Cape Verde: Promoter of Development or Tool for Border Closure?"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9.

UNESCO. 2006.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1997.*

[언론 · 보도 자료]

법무부 보도자료. 2018.「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12월 14일)

_____. 2019.「법무부, 외국인 호텔·유흥 분야 종사자 인권보호 강화한다」. (12월 10일)

여성가족부. 2014.「예술 · 흥행(E-6)비자 입국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강화」. (3월 26일).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검색일: 2020. 10. 7).

「영국, 이민규제 대폭강화…숙련기술·영어능력 본다」. 2020.『연합뉴스』. (2월 1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73700081(검색일: 2020. 10. 14).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강제노동 조장" 헌법소원」. 2020.『연합뉴스』. (3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8116400004

(검색일: 2020. 10. 13).
「이주민정책이 여성 인신매매 사각지대 만든다」. 2019. 『미디어 오늘』. (4월 29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53(검색일: 2020. 10. 7).
정부24. 2020. 「고용허가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50일 일괄 연장 조치」. (4월 13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40791(검색일: 2020. 10. 13).
「E-6 비자는 성매매 허가증?」. 2012. 『한겨레』. (11월 3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general/558845.html(검색일: 2020. 10. 13).
"EU Approves $545M of Aid for Refugees in Turkey." 2020. *Daily Sabah*. (June 25).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eu-approves-545m-of-aid-for-refugees-in-turkey/news(검색일: 2020. 10. 14).
Deutsche Welle. 2019. "France to Set up Regional Quotas for Foreign Worker Permits." (November 5). https://www.dw.com/en/france-to-set-up-regional-quotas-for-foreign-worker-permits/a-51126799(검색일: 2020. 10. 14).
_____. 2020. "Germany's New Labor Immigration Law Explained." (March 1). https://www.dw.com/en/germanys-new-labor-immigration-law-explained/a-52575915(검색일: 2020. 10. 12).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11. "Free Movement: Workers from Eight Member States that Joined EU in 2004 Finally Enjoy Full Rights." (April 2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1_506(검색일: 2020. 10. 14).
_____. 2014. "Statement by Cecilia Malmstrom on the Ratification of the EU-Turkey Readmission Agreement by the Turkish Parliament." (June 2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14_210(검색일: 2020. 10. 14).
European Council Press Release. 2016. "EU-Turkey Statement, 18 March

2016." (March 18).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6/03/18/eu-turkey-statement/(검색일: 2020. 10. 14).

"Germany Counts Heads and Finds 1.5 Million Fewer Residents Than It Expected." 2013. *The New York Times*. (May 31). https://www.nytimes.com/2013/06/01/world/europe/census-shows-new-drop-in-germanys-population.html(검색일: 2020. 10. 14).

Gouveia, Luis and Ismain Amnaiy. 2017. "Expert Voice: Taking Stock of the Joint Valletta Action Plan." (March 24) *ICMPD*. https://www.icmpd.org/news-centre/news-detail/expert-voice-taking-stock-of-the-joint-valletta-action-plan/(검색일: 2020. 9. 9).

"France Announces Tough New Measures on Immigration: With Municipal Elections Approaching, President Emmanuel Macron Hopes the Stricter Stance Will Lure Voters Away from the Far Right." 2019. *New York Tims*. (November 6). https://www.nytimes.com/2019/11/06/world/europe/france-macron-immigration.html(검색일: 2020. 10. 14).

"How Will the UK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Work?" 2020. *BBC*. (December 1). https://www.bbc.com/news/uk-48785695(검색일: 2020. 12. 14).

Oxford Analytica. 2019. "The EU Will Discreetly Outsource Migration Management." (July 18). https://dailybrief.oxan.com/Analysis/DB245268(검색일: 2020. 10. 30).

"Walk or Die: Migrants Expelled from Algeria Forced on Deadly March through Sahara." 2018. *France 24*. (June 25). https://www.france24.com/en/20180625-algeria-migrants-expelled-niger-mali-sahara-desert(검색일: 2020. 10. 30).

[온라인 · DB 자료]

고용노동부 누리집.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3.do;jsessionid=CSC6u29NUNSM0WR2ZbLJuiEqx1z154kGLibOUPpN38zZNC0Pypau2MotRqJnm2gm.moel_was_outside_servlet_www2(검색일: 2020. 10. 13).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21/subview.do(검색일: 2020. 9. 28).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고용허가제 정보」.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검색일: 2020. 10. 30).

통계분류포털.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연계표」.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검색일: 2020. 11. 11).

Budapest Process. https://www.budapestprocess.org/budapest-process/143-participating-states(검색일: 2020. 6. 30).

Bundesagentur für Arbeit. "Admission to the German Labour Market." https://www.arbeitsagentur.de/en/german-labour-market(검색일: 2020. 10. 12).

Euraxess Poland. "Work Permit(for Non-European Citizens)." https://www.euraxess.pl/poland/information-assistance/work-permit-non-european-citizens(검색일: 2020. 10. 14).

European Commission. "Annual Report on Migration and Asylum."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networks/european_migration_network/reports/nationalreports_en(검색일: 2020. 10. 28).

_____. "EU Immigration Portal, Blue Card, France." https://ec.europa.eu/immigration/blue-card/france_en(검색일: 2020. 10. 14).

_____. "EU Immigration Portal, Slovakia." https://ec.europa.eu/immigration/country-specific-information/slovakia/employed-worker_en(검색일: 2020. 10. 14).

_____. “European Agenda on Migration-Legislative Documents.”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european-agenda-migration/proposal-implementation-package_en(검색일: 2020. 6. 30).
_____. “European Skills Agenda.”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223&langId=en(검색일: 2020. 10. 12).
_____.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international-affairs/global-approach-to-migration_en(검색일: 2020. 6. 30).
_____. “Legal Migration and Integration.”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legal-migration_en(검색일: 2020. 6. 30).
_____. “Legal Migration Fitness Check.”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legal-migration/fitness-check_en(검색일: 2020. 6. 30).
_____. “Mobility Partnership Facility(MPF).” https://ec.europa.eu/home-affairs/what-we-do/policies/international-affairs/global-approach-to-migration/mobility-partnership-facility_en(검색일: 2020. 7. 3).
_____. 2019. “Organization of Migration and Asylum System in France Overview,” Last updated on February 2019. https://www.immigration.interieur.gouv.fr/content/download/117390/941763/file/1_10a_france_factsheet_2019_en.pdf(검색일: 2020. 10. 14).
European Parliament. “Immigration Policy.” https://www.europarl.europa.eu/factsheets/en/sheet/152/immigration-policy(검색일: 2020. 4. 29).
European Union. “Regulations, Directives and Other Acts.” https://europa.eu/european-union/law/legal-acts_en(검색일: 2020. 6. 30).
_____. “EU Treaties.” https://europa.eu/european-union/law/treaties_en(검색일: 2020. 11. 17).
Eurostat.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ttps://ec.europa.eu/eurost

at/web/population-and-housing-census/census-data/database (검색일: 2020. 11. 11).
_____. "Population on 1 January by Age Group, Sex and Citizenship[migr_pop1ctz]"(검색일: 2020. 8. 1).
_____. "Population by Sex, Age, Citizenship and Labour Status(1000)[LFSA_PGANWS]"(검색일: 2020. 10. 14).
Expat Arrivals. "Work Permits For Czech Republic." https://www.expatarrivals.com/europe/czech-republic/work-permits-czech-republic (검색일: 2020. 10. 14).
Expatica. "Guide to Visas and Immigration in the UK." https://www.expatica.com/uk/moving/visas/uk-visas-immigration-104348/#immigration(검색일: 2020. 10. 14).
_____. "Work in France: A Guide to French Visas and Permits." https://www.expatica.com/fr/moving/visas/france-work-visas-101098(검색일: 2020. 10. 14).
GOV.UK. "Immigration Rules, Immigration Rules Appendix K: Shortage Occupation List." https://www.gov.uk/guidance/immigration-rules/immigration-rules-appendix-k-shortage-occupation-list(검색일: 2020. 10. 14).
_____. "The UK's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Policy State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uks-points-based-immigration-system-policy-statement/the-uks-points-based-immigration-system-policy-statement(검색일: 2020. 10. 14).
_____. "Visas and Immigration, Work in the UK, Apply to the EU Settlement Scheme(Settled and Pre-Settled Status)." https://www.gov.uk/settled-status-eu-citizens-families(검색일: 2020. 10. 14).
_____. "Visas and Immigration, Work in the UK, General Work Visa(Tier 2)." https://www.gov.uk/browse/visas-immigration/work-visas(검색

일: 2020. 10. 14).

Just Landed. "Working in Hungary." https://www.justlanded.com/english/Hungary/Hungary-Guide/Visas-Permits/Working-in-Hungary(검색일: 2020. 10. 14).

Maastrich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2012. "EU Migration Cooperation with Cape Verde." http://mgsog.merit.unu.edu/ISacademie/docs/PB7.pdf(검색일: 2020. 7. 4).

Poland Unraveled. "How to Get Work Permit in Poland." https://www.polandunraveled.com/get-work-permit-poland/(검색일: 2020. 10. 14).

Prague Referral. "Blue Card, Employee Card or work permit in Czech Republic: What's the Difference?" https://www.praguereferral.cz/blue-card-employee-card-or-work-permit-in-czech-republic-whats-the-difference/(검색일: 2020. 10. 14).

Rabat Process. "Our Partners." https://www.rabat-process.org/en/about/our-partners/336-our-partners(검색일: 2020. 7. 3).

_____. "The Rabat Process." https://www.rabat-process.org/en/about/rabat-process/333-rabat-process(검색일: 2020. 7. 3).

The Migration Observatory. "Q&A: The UK's New Points-Based Immigration System after Brexit. https://migrationobservatory.ox.ac.uk/resources/commentaries/qa-the-uks-new-points-based-immigration-system-after-brexit/(검색일: 2020. 10. 14).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of the Czech Republic. "Third-Country Nationals, Employee Card." https://www.mvcr.cz/mvcren/article/employee-card-682810.aspx?q=Y2hudW09MQ%3d%3d(검색일: 2020. 10. 14).

Schengen Visa Info. "Germany Employment Visa Requirements and Allplication Process." https://www.schengenvisainfo.com/germany-visa/employment-visa/(검색일: 2020. 10. 12).

ShieldGEO. "Immigration & Work Permits." https://shieldgeo.com/hungary-immigration-and-work-permits/(검색일: 2020. 10. 14).

World Bank. “GDP per Capita(Current U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검색일: 2020. 6. 30).

_____. “Population, Total.”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검색일: 2020. 8. 20).

_____. “World Governance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data/reports.aspx?source=worldwide-governance-indicators(검색일: 2020. 10. 30).

[법률 · 협정문 · 정부문서]

「난민법」(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08호, 2016. 12. 20, 일부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 2014. 7. 29. 법률 제12349호, 2014. 1. 28, 타법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시행 2019. 7.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2019. 7. 16, 일부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9호, 2020. 3. 24.,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0호, 2020. 8. 5.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 21. 법무부령 제997호. 2021. 1. 21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전원재판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헌집 23-2, 623].

European Commission. 20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Circular

Migration and Mobility Partnership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ird Countries." COM(2007) 248. (May 16). Final. 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07:0248:FIN:EN:PDF(검색일: 2020. 7. 4).

_____. 201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COM(2015) 240 Final. (May 13).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european-agenda-migration/background-information/docs/communication_on_the_european_agenda_on_migration_en.pdf(검색일: 2020. 6. 30).

_____. 201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ction Plan on the Integration of Third Country Nationals." COM(2016) 377 Final. (June 7). https://ec.europa.eu/migrant-integration/news/europe-integration-action-plan-of-third-country-nationals-launched(검색일: 2020. 10. 15).

_____. 2020.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a 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COM(2020) 609 Final. (September 2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20:609:FIN(검색일: 2020. 10. 15).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3a. "Council Directive 2003/86/EC of 22 September 2003 on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Official Journal L 251*.

_____. 2003b. "Council Directive 2003/109/EC of 25 November 2003 Concerning the Status of Third-Country Nationals Who are Long-Term Residents." *Official Journal L 016.*

_____. 2005. "Global Approach to Migration: Priority Actions Focusing on Africa and the Mediterranean." 15744/05. (December 13).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5744-2005-INIT/en/pdf(검색일: 2020. 7. 5).

_____. 2008. "Joint Declaration on a Mobility Partner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Cape Verde." 9460/08 ADD 2. (May 21).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we-do/policies/international-affairs/global-approach-to-migration/specific-tools/docs/mobility_partnership_cape_verde_en.pdf(검색일: 2020. 7. 5).

_____. 2009. "Council Directive 2009/50/EC of 25 May 2009 on the Conditions of Entry and Residence of Third-Country Nationals for the Purposes of Highly Qualified Employment." *Official Journal L 155.*

_____. 2011. "Directive 2011/9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11 on a Single Application Procedure for a Single Permit for Third-Country Nationals to Reside and Work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State and on a Common Set of Rights for Third-Country Workers Legally Residing in a Member State." *Official Journal L 343.*

_____. 2014a. "Directive 2014/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February 2014 on the Conditions of Entry and Stay of Third-Country Nationals for the Purpose of Employment as Seasonal Workers." *Official Journal L 94.*

_____. 2014b. "Directive 2014/6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y 2014 on the Conditions of Entry and Residence of Third-Country Nationals in the Framework of an

Intra-Corporate Transfer." *Official Journal L 157.*

European Council. 2014. "Council Conclusions of 26/27 June 2014." https: www.consillium.europa.eu/media/39245/143477.pdf(검색일: 2020. 6. 30).

European Union.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Consolidated vers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12016E/TXT(검색일: 2020. 6. 30).

ICMPD. 2018. "Marrakesh Political Declaration and Action Plan 2018-2020." 5th Euro-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May 2). https://www.rabat-process.org/en/about/rabat-process/marrakesh-declaration-and-action-plan(검색일: 2020. 10. 14).

Union Européenne et Maroc. 2013. "Déclaration Conjointe Établissant un Partenariat de Mobilité Entre le Royaume du Maroc et L'Union Européenne et Ses États Membres". https://ec.europa.eu/home-affairs/sites/homeaffairs/files/what-is-new/news/news/2013/docs/20130607_declaration_conjointe-maroc_eu_version_3_6_13_fr.pdf (검색일: 2020. 10. 30).

Valletta Summit. 2015a. "Valletta Action Plan." 2015 Valletta Summit on Migration. (November 11-12).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21839/action_plan_en.pdf(검색일: 2020. 7. 3).

_____. 2015b. "Valletta Political Declaration." 2015 Valletta Summit on Migration. (November 11-12).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21841/political_decl_en.pdf(검색일: 2020. 7. 3).

Executive Summary

Impact of 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Dong-Hee Joe, Cheolwon Lee, Hyun Jean Lee, Minji Jeong, and Seongman Moon

This report analyzes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EU* henceforth). First, the EU's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on migration are analyzed, and some stylized-facts are established. Comparing these stylized-facts with the Korea counterparts, it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so, main features of the states of migration in the EU are describ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 major interest regarding immigration, in Korea as well as in the EU, would be its impact on labor market in destination countries.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on thi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recipient labor market is estimated, using the data from the EU. By doing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report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offer a reference to assess the impact of an increase of immigration on the Korean labor market.

〈책임〉

조동희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장
(現, E-mail: dhjoe@kiep.go.kr)

저서 및 논문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공저, 2018)
"Minimum Wages and Wage Inequality in the OECD Countries" (공저, 2020) 외

〈공동〉

이철원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선임연구원
(現, E-mail: cw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공저, 2018)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19) 외

이현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hjean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공저, 2018)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공저, 2019) 외

정민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사, 경제학사 및 정치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사회과학 석사(정치학 전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現, E-mail: mj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협정의 발효 의미와 전망』(공저, 2019)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공저, 2019) 외

문성만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스페인 카를로스 3세대학(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경제학과 조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現, E-mail: nopasanada0501@gmail.com)

저서 및 논문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공저, 2018)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공저, 2019) 외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20년

20-01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 · 중 경쟁력 변화와 대응전략 / 조 철 · 정은미 · 김종기 · 이 준 · 남상욱 · 이재윤 · 이은창 · 조용원 · 김양팽 · 심우중 · 윤자영 · 이고은 · 이자연 · 전수경

20-02 주요 중소 · 중견 기업의 대중국 전략 분석 / 이장규 · 정영록 · 이준엽 · 서봉교

20-03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 · 중 관계에 대한 함의 / 이남주 · 문익준 · 안치영 · 유동원 · 장윤미

20-04 미 · 중 간 기술패권 경쟁과 시사점 / 연원호, 나수엽 · 박민숙 · 김영선

20-05 신북방시대 한국 · 몽골 미래 협력의 비전: 분야별 협력과제와 실현방안 / 김홍진 · 김보라 · 박정후 · 이평래 · 유원수

20-06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 정지원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최현양

20-07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최장호 · 최유정 · 한하린

20-08 산업간 융 · 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 강구상 · 장영신 · 오태현 · 임지운

20-09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 현상백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서봉교

20-1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 한형민 · 김정곤 · 김도연 · 이성희 · 백종훈

20-11 지식재산권의 국제 논의 동향과 영향에 관한 연구 / 김현수 · 예상준 · 금혜윤 · 강민지

20-12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보람 · 이정은 · 손원주

20-13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 최인아 · 곽성일 · 정재완 · 이정미 · 박나연 · 김미림 · 이재현 · 조원득

20-14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 허재철 · 양평섭 · 정지현 · 현상백 · 연원호 · 최원석 · 양갑용 · 이동률 · 임상훈 · 유동원 · 윤종석 · 김정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5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
김정곤 · 나승권 · 이재호 · 윤지현 · 김은미

20-16 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20-17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
한민수 · 안성배 · 김효상 · 김수빈 · 이진희 · 김소영 · 편주현

20-18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
강태수 · 안성배 · 김경훈 · 강은정

20-19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구경현 · 김혁황

20-20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다자협상 대응방향 /
서진교 · 이천기 · 이주관 · 김지현 · 정명화

20-2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오수현 · 박영석 · 이성희 · 김은미

20-22 푸틴 4기 한 · 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
박정호 · 김석환 · 정민현 · 강부균 · 김초롱 · 세르게이 수트린 ·
올가 트로피멘코 · 이리나 코르군

20-23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 최원석 · 양평섭 · 박진희 · 김주혜 · 최지원 · 자오씽왕(焦兴旺)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
장영신 · 곽성일 · 곽소영 · 박은빈 · 문성만 · 남상열

20-2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전략 / 정지현 · 최원석 · 김홍원 · 김주혜

20-26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조문희 · 배찬권 · 이규엽 · 강준구 · 김지현

20-27 신용공급 변동이 경제성장 및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김효상 · 최상엽 · 양다영 · 김유리

20-28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 윤덕룡 · 송원호 · 이진희

20-29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라미령 · 정재완 · 신민금 · 김제국

20-30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 이천기 · 이주관 · 박혜리 · 강유덕

20-31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조동희 · 이철원 · 이현진 · 정민지 · 문성만

20-32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 윤여준 · 홍성우 · 김진오 · 김종혁 · 남지민

20-3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 윤덕룡 · 안성배 · 채희율 · 이영섭 · 문우식

20-34 한 · 중 · 일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 정형곤 · 이홍배 · 이형근 · 박민숙

20-35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연원호 · 현상백 · 박민숙 · 이효진 · 오윤미

■ 2019년

19-01 미국 통화정책의 국제전이: 뉴스와 노이즈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훈 · 김원기

19-02 남 · 북 · 중 경제협력 방안 연구 / 이현태 · 최유정 · 최재희 · 김태만 · 림금숙 · 백지운 · 서봉교 · 안국산 · 원동욱 · 이왕휘 · 이현우 · 이현주 · 최필수

19-03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연계 방안 / 한홍열 · 윤성욱 · 박지원 · 정은이

19-04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정재욱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9-05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 권 율 · 정지선 · 허윤선 · 송지혜 · 유애라 · 김미림

19-06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박영호 · 정재욱 · 김예진 · 정민지 · 황규희

19-07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 문진영 · 나승권 · 이재호 · 이성희 김은미

19-08 데이터 경제의 성장과 무역에 관한 연구 / 이규엽 · 강준구 · 박지현 · 박현

19-09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장호 · 최유정 · 김범환 · 임수호

19-10 내국인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 · 정영식 · 김경훈 · 강은정

19-11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 ·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조동희 · 강구상 · 권혁주 · 문성만

19-12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 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 / 박정호 · 정민현 · 강부균 · 정동연 · 김초롱 · 제성훈 · 세르게이 루코닌 · 예카테리나 자클랴즈민스카야

19-13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
김종덕 · 윤여준 · 권혁주 · 정민철 · 김유리 · 황운중 · 김경훈 · 김원기

19-14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
정영식 · 김정곤 · 한형민 · 정재완 · 이정미 · 김제국 · 윤지현

19-15-1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
김규판 · 강구상 · 김종혁 · 오태현 · 이현진 · 손원주

19-15-2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 유럽 · 일본을 중심으로
-제2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제도 / 김현수 · 강민지 · 이정은 · 이용규

19-16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
구경현 · 오수현 · 박혜리 · 김민성 · 황운중

19-17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
조문희 · 김영귀 · 배찬권 · 금혜윤 · 엄준현

19-18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이상훈 · 김홍원 · 최지원 · 김주혜 · 최재희

19-19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정형곤 · 이철원 · 박민숙 · 전봉걸

19-20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
현상백 · 이효진 · 조고운 · 오윤미

19-21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윤덕룡 · 이동은 · 이진희

19-22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김효상 · 양다영 · 강은정

19-23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
안성배 · 한민수 · 김수빈 · 이진희

19-24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
한민수 · 김혁황 · 최혜린 · 박단비 · 김지수

19-25 중국산업, 얼마나 强한가?: 중국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토대 분석
왕윤종 · 최필수 · 노성호 · 은종학 · 문익준 · 오대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es 20-31

Impact of 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Dong-Hee Joe, Cheolwon Lee, Hyun Jean Lee, Minji Jeong, and Seongman Moon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들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특징을 파악한다.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 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이민 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 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민 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94320
9 788932 217895

ISBN 978-89-322-1789-5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